

사외이사제도의 이해와 실무

2011. 1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발간에 즈음하여

1998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제도를 의무화하여 10여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가증권상장규정을 통하여 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사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고, 2000년 1월에는 당시 증권거래법에 이를 법제화하였으며, 이후 2009년 3월에는 상법의 특례규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610개사에서 3,101명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1사당 평균 1.92명으로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나 아직도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외이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자료가 출간되었으나 사외이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할과 기능 및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업무수행 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실무지침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사외이사들에게는 직무수행에 모범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실무진에게는 사외이사와 관련한 제반 제도와 실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제도의 이해와 실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실무진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올바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11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2팀

- 목 차 -

I . 사외이사제도의 일반적 이해 1

- 1. 사외이사의 개념 / 1
- 2. 도입배경 / 4
- 3.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 8
- 4. 각국의 사외이사제도 / 23
- 5.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 / 29

II .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 40

- 1. 지배구조와 사외이사제도 / 40
- 2. 사외이사와 경영진과의 관계 / 42
- 3.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 / 44

III . 사외이사의 선임과 해임 52

- 1. 사외이사의 선임 / 52
- 2. 사외이사의 해임 / 61
- 3. 사외이사 선임관련 실무상 절차와 방법 / 67

IV. 사외이사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 72

- 1. 사외이사의 권한 / 72
- 2. 사외이사의 의무 / 83
- 3. 사외이사의 책임 / 91
- 4. 사외이사의 책임완화 / 96
- 5. 사외이사와 소송 / 99

V. 감사위원회제도와 사외이사 104

- 1. 감사위원회 구성과 사외이사 / 104
- 2. 상장회사가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 / 106
- 3. 일반감사위원회와 특례(엄격)감사위원회 / 108
- 4. 2011 개정상법의 내용 / 116

VI. 사외이사의 보수 118

- 1. 보수결정의 원칙 / 118
- 2. 보수성 경비 / 120
- 3. 퇴직금의 지급제한 / 121
-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21
- 5. 당해 회사의 주식보유 / 122

VII. 사외이사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등 124

- 1. 이사 및 사외이사 관련 판례 / 124
- 2.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사례 / 130
- 3. 사외이사 등 관련 Q&A / 134

참고문헌 142

□ 부록

- 1. 사외이사 관련법규 및 규정(상법, 자본시장법 등 발췌)
- 2.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
- 3. 상장회사 표준사외이사 행동강령
- 4.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I. 사외이사제도의 일반적 이해

1.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라는 말은 미국 주식회사의 outside director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현재는 그 독립성을 강조해 Independent director로 불리기도 한다.

'상무에 종사'한다는 말은 상시 회사의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는 말로 일상 업무인가 아닌가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구분이며 이는 업무집행의 형태인 '상근'과는 다른 의미이다.

이러한 사외이사는 그 직무와 역할이 사내이사와 구분되나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독·감시 등에서는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우리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고 사외이사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다. 즉 상법상 사외이사란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382조 제3항).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 사외이사제도의 이해와 실무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사외이사가 된 경우에도 위의 어느 하나의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382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는 별도로 상장회사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8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일반 주식회사에 적용하는 상법 제382조 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내지 제6항).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우리 상법상 대표이사만이 업무집행기관이지만 회사는 보통 대표이사 외의 이사에게도 대내적으로 업무집행권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이사를 '사내이사'라고 하고, 회사 내부에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사 중 위의 사외이사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사를 '사외이사'라고 하며, 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이사를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라고 한다.

따라서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 이사의 구분**

이사는 상무(常務)에 종사하는지 여부 및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 사내이사 :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로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 사외이사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 기타 비상무이사 :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로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 위의 이사는 각각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2. 도입배경

1997년 후반에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원인이 기업지배구조에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기업 내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여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실을 초래했다는 반성이 일자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이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1998년 초에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기업지배구조개혁’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과제였고 이에 정부는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추진방안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의한 경영진의 책임강화가 포함되었으며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써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이하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과 변화를 연혁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98년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의한 경영진의 책임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1998 사업연도부터 ‘유가증권상장규정’을 통하여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최소 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참고로 제도가 의무화되기 이전에도 비공식적으로 사외이사제도를 운용해 온 회사가 있는데 1996년부터 현대그룹, 1997년 포항

제철 등이 그 예이다.

1999년 2월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위원회가 그 해 9월에 제정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는 이사회에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도록 하였다. 특히 금융기관과 대규모 공개기업(자산 1조원 이상)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전체 이사의 1/2이상(최소한 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권고하였다(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II.2.2.1)

종전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상장회사에 의무화하였던 사외이사제도를 2000년 1월 개정 증권거래법에서 이를 명문화하여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하였고 대규모 주권상장법인(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총 이사수의 1/2 이상(최소 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00년 11월에는 사외이사제도개선위원회가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을 제정하고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충실성을 유도하였다.

2001년 1월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이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대규모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총수의 1/2이상 및 3인 이상)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으며 대규모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외이사제도를 법제화하고 그 선임범위를 확대하였다.

2001년 3월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주주총회 추천을 의무화하여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소수주주의 사

외이사 후보추천권을 보장하였고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하였다(다만,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은 제외).

2002년 1월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였다.

2003년 12월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수를 종전 1/2이상에서 과반수로 선임하도록 강화하였다.

2005년 1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회사 표준 사외이사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상장회사의 활용을 권고하였다.

2009년 2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법은 폐지되었으며 구 증권거래법에 있던 사외이사의 정의와 자격요건 등 관련규정이 2009년 1월 개정된 상법으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0년 1월 2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열어 은행권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과정

시기	주요 내용	근거/기관
19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법인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이사 총수의 1/4이상, 최소 1인 이상) 	유가증권 상장규정
19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제정 금융기관과 대규모공개기업(자산 1조원 이상)은 이사총수의 1/2이상(최소 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권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 (권고)
20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 	증권거래법

시기	주요 내용	근거/기관
	<p>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대규모공개기업(자산 2조원 이상)은 이사총수의 1/2이상(최소 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의무화 	
200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 제정(2000.12.1)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 개정(2007.12.17))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제정위원회(권고)
20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의 선임 의무화(자산 1천억원 미만 벤처기업은 제외) 대규모기업(자산 2조원 이상)과 금융기관은 이사총수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의무화 대규모기업(자산 2조원 이상)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 	증권거래법
200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외이사의 수는 최소 2인 이상 대규모공개기업(자산 1조원 이상)은 과반수(최소 3인 이상) 사외이사 선임 권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권고)
200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 3인 이상 및 이사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 의무화 	증권거래법
20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회사 표준 사외이사 행동강령』 제정 	한국상장회사협의회(권고)
200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증권거래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법률에 규정되었던 사외이사의 정의와 자격요건 등을 “상법”으로 이관 	상법
2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정·공표 	은행연합회(권고)

3.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1) 사외이사 관련 법률의 체계

현행법상 사외이사제도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상법(일반주식회사, 상장회사의 특례),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자), 은행법(은행), 보험업법(보험),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 등이 있다.

참고로 사외이사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 중에서 상장회사 특례에 관한 규정(제542조의8)과 은행법에서는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이사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을 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의 내용을 설명한다.

사외이사제도 관련 법률의 체계

대 상 회 사	관 련 법 률
일반 주식회사	상법 제382조
상장회사	상법 제542조의8 이하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법 제25조
은행	은행법 제22조
보험	보험업법 제15조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가. 상법상의 사외이사제도

상법상의 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8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사외이사의 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그 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의 후보에 포함시켜야 한다(동법 제542조의8 제4항, 제5항).

또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동법 제415조의2 제2항).

사외이사의 선임할 수

대상회사	사외이사 수	관련법률
일반 상장법인 등	이사 총수의 1/4 이상	상법 제542의 8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13 제1항
대규모 상장법인	3인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	

나. 자본시장법상의 사외이사제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자본시장법 제25조 제1항),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제2항). 또한 금융기관은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다. 은행법상의 사외이사제도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은행법 제22조 제2항),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22조 제3항). 또한 금융기관은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항).

라. 보험업법상의 사외이사제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는 이사회내에 상무에 종사하

지 아니하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보험업법 제15조 제1항),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제2항). 또한 보험회사는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마.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사외이사제도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외이사(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제1항).

즉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3인,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은 2인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제1항).

그리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의3 제2항).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항).

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사외이사제도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제1항),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 제2항).

(2)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이고, 자신을 추천한 주주나 선임에 기여한 주주들의 대리인이나 수임인은 아니다. 이 점은 상근이사와 사외이사 간에 차이가 없다(사외이사 모범규준 2.1).

1) 이사의 법적지위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므로 흔히 이사를 주주의 대리인 내지는 주주의 대변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써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이사는

회사의 기관으로 취임하는 것이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다(상법 제382조 제2항). 즉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이 점은 상근이사와 사외이사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2) 수임인으로서의 이사의 의무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이므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회사 자체의 이익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하고, 특히 자신을 추천하거나 실질적으로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나 경영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 된다. 주주는 회사에 출자한 자이므로 경제적인 의미에서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회사의 경영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주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이 증대함으로써 지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회사법상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위

이사는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이다. 따라서 이사는 그에 부합하는 주의를 다하여 회사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점은 상근이사와 사외이사 간에 차이가 없다(사외이사 모범규준 2.2).

1) 이사의 의무의 성격

이사가 회사의 수임인이라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바꾸어 말하면 이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위임에 있어 사무처리를 수임한 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은 민법 제681조에 규정되어 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이므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이사는 회사로부터의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2) 위임의 본지

「위임의 본지」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임인은 “위임인이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겼는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취지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일의 성질상 위임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부탁하는 것은 위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맡길 때에는 자기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해주고 소송에 이기게 해달라는 뜻에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충분히 주장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다투면 이길 수 있는 사건인데도 소송이 번거로우니까 적당히 상대방과 화해를 한다면 이는 위임의 본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상법 제169조) 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의 「위임의 본지」란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영리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영리성이야말로 회사의 존재이유라 할 것이어서, 회사의 경영자에게는 최고의 가치기준을 이루며, 모든 행동의 목표가 된다. 예컨대 회사의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자선단체에 선선히 기부를 한다든지, 회사의 영업기회를 다른 회사나 계열회사에 양보하는 것은 이사에 대한 위임의 본지, 즉 영리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3)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란 이사가 회사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고도의 주의력을 요하는 의무이다.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사외이사의 경우 당해 회사에 상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보통이고, 통상 법률전문가나 회계전문가와 같은 전문직업인 또는 관료출신과 같은 다른 직역의 경력자들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외이사들은 당해 회사의 업무에 어둡고, 당해 회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잘 모른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거나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일을 잘 알지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사외이사가 회사의 모든 실무적인 사안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반도체회사의 사외이사가 반도체제조공정이나, 반도체 시장에 관해 전문적인 식

견을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반도체사업에 관한 경영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일반적인 소양을 구비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면, 반도체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의문을 품고, 이 점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자료를 청취하고 필요성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은행이 어느 거래처에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규모의 거래대출을 해주고자 할 때, 사외이사는 여신업무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대표이사가 거래처의 신용도와 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는지, 대출금액이 법규가 정하는 한도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관해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사외이사에게 법이 기대하는 것은 경영자가 범하기 쉬운 독단을 경계하며 이사 전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주도적인 역할이므로 이러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의를 다하는 것이 사외이사의 주의의무라 할 수 있다.

4) 충실의무

상법에서는 이사의 의무의 하나로 「충실의무」를 들고 있다(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특히 회사의 이익과 이사의 이익이 직접, 간접으로 충돌할 때, 또는 어떤 기회가 회사와 이사에게 같이 주어졌을 때 회사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행동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사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영업기회가 충돌하는 예는 흔히 있고, 그러한 때에는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유혹을 받지만, 사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이사가 절대로 피해야 할 일이다. 비단 자신의 이익만이 아

나라 자신과 이해를 같이 하는 다른 회사나 개인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다. 경영의사결정자로서의 지위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 더불어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최고 경영의사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고,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그 밖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사외이사 모범규준 2.3).

회사는 그 사업을 위하여 대내외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를 위해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뤄진다.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의사는 회사의 행동에 관한 최고의 경영의사를 이루므로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사회 의 의사결정이란 구성원인 다수 이사 개개인의 의사를 모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회 의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개개 이사들이 표현하는 의사의 합리성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의결의가 최선의 결과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 의 출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사회 결의에 임하여서는 주어진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지혜를 발휘하여 의사개진과 표결에 임해야 한다.

라. 사외이사와 상근이사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이나, 이사로서의 법적인 권한,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상무에 종사하는 상근이

사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사외이사 모범규준 2.4).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보수도 상근이사의 수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 점 때문에 흔히 상근이사보다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가 위임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고, 위임의 본질에 입각하여 설명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1) 위임의 본질

원래 위임이란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고도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맺어지는 계약이다. 일방이 타방에 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위임인은 수임인을 철저히 믿고 일을 맡기는 것이므로 수임인은 위임인의 신뢰를 존중하여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이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가 위임의 본질을 이루므로 보수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얼마이냐는 것은 위임관계에서의 의무내용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무상이 원칙이었으며, 현행 민법 하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무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상근이사와 사외이사의 등가성

회사와 사외이사의 관계가 위임이고, 위임이란 보수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상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로 사외이사의 보수가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의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사회에서 옳지 않은 결의를 하였을 경우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모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데(상법 제399조 제2항), 사외이사가 이 결의에 찬성한 경우 상근이사와 똑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다만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는 달리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특정의 업무집행에 관해 책임질 일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상근이사보다는 책임발생의 원인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외이사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해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항에 관해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의무를 지므로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요컨대 상근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직접 맡고 있다는 점에서 상근이사와 사외이사의 업무집행 관여 정도 및 책임 발생원인 등에 따라 특정 업무집행에 대한 책임의 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외이사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직무 및 기타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실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이는 면사류의 수탁가공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에서 생긴 일이다. 이 회사에는 갑, 을이라는 상근이사와 병이라는 비상근이사가 있었다. 갑과 을이 세법을 잘 몰라 세무신고를 그릇되게 한 탓에 이 회사는 부담하지 않아도 좋을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회사의 재산이 줄고 회사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지자, 채권자가 갑, 을,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병은 비상근이사로서 잘못된 세무신고에 직접 관여한 바도 없고 이 세무신고가 이사회에서 다루어진 바도 아니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대법원은 비상근이사라도 자신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안에 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5. 6. 25판결, 84다카1954). 「알 수 있었던」 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알지 못했지만,

당연히 알았어야 할 사안으로서 알지 못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인정될만한 것을 뜻한다.

마.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

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사의 행동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 하여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이와 같은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에 유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사외이사 모범규준 2.5).

1) 기관구조와 이사의 책임과의 관계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관해 결정권을 갖지만, 일상적인 업무는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법령,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업무의 집행행위는 이사의 고유권한으로서 수행하는 것, 이사회에 의해 의하는 것,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조직법상 이사보다 상위의 기관이고 따라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사의 판단보다 타당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다.

그런데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에 의해 결의가 항상 적법하고 타당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사회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주식을 배정하는 결의를 하였다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

도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였다면 이 결의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 이사는 이러한 위법한 결의도 준수하여야 하는가? 또 이를 준수하여 집행한 경우 이사는 면책되는가?

2) 이사의 책임판단의 독자성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에 관여한 이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갑이라는 이사가 회사의 부동산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려 한다고 하자. 이사가 회사의 반대당사자가 되어 하는 거래를 「자기거래」라 하는데, 자기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398조). 그런데 이사가 회사의 자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이사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소치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래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갑이라는 이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결의에 가담한 이사들은 전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실제의 예를 들어본다. 1998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대표소송에 관한 판례가 나온 바 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일은행의 이사들이 한보철강에 대해 거액의 대출을 하였는데, 한보철강이 도산하게 되어 대출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참여연대가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모아 행장과 기타 임원들의 책임을 묻은 사건이다. 당초 대출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실무자들은 대출이 불가한 E급으로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대출에 관한 내규에 E급으로 판정되더라도 상임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대출이 가

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행장이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대출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규정에 따른 상임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므로 대출은 적법하다고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대출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숙고하여 신중히 대출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한보철강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서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거액을 대출한 것은 임무해태라고 판단하였다(서울지방법원 1998.7.24판결, 97가합39907).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의 업무집행행위가 배임과 같은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역시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10.13판결, 89도1012).

3) 사외이사의 주의사항

이상과 같이 이사의 의무준수 여부와 책임의 유무는 이사의 행위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사는 항상 적법하고 공정하게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업무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위법·부당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사외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사회에서의 다수의 견이나, 그에 선행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의식하지 말고 상정되어 있는 안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각국의 사외이사제도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반성이 일자 정부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1998년 초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독립적인 위치에서 지배주주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 직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사항의 결정을 위한 조언 및 전문지식의 제공 등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통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진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좀 더 이해를 고취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간략히 설명한다.

(1) 미국

미국에서 사외이사의 존재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이었지만, 대기업에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다. 다만 당시에 사외이사는 이사회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명 철도회사였던 팬 센트럴사의 도산을 계기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많은 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손실과 관련한 위법 정치현금이 밝혀지게 된 것도 기업의 통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한 하나의 원인이었다.

한편, 뉴욕증권거래소는 1956년의 2인 이상인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가를 의무화하기 시작하였고, 1973년에는 상장회사에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참가시킬 것을 권하고 있었는데 이는 1978년에 의무화되었다. 그 때 쯤 사외이사의 명칭도 outside Director에서 Independent Director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의 제정에 의해 연금기준의 연금가입자에 대한 수탁책임이 명기되었기 때문에 경영감시에 있어서의 기관투자자의 소극자세의 대전환을 촉진하게 되었다.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Law Institute : ALI)는 1977년에 「기업지배구조의 절차」에 관한 사업을 시작으로 1982년에 「기업지배구조와 회사구조의 원리」, 1984년에 「기업지배구조와 회사구조의 원리」, 1984년에 「기업지배구조의 원리」, 1992년에는 「기업지배구조 원칙·분석과 권고」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미국의 우량대기업이 거액적자를 계상하면서 사외이사의 역할이 재검토되었다.

이러한 변천을 거치면서 미국형 기업지배구조가 매우 우수하게 자리 잡았다고 하여 각국의 지배구조가 이러한 미국형으로 언젠가는 수렴될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잇달아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의문을 던지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2001년 12월의 엔론 사건과 2002년 7월의 월드콤(Worldcom)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시대통령은 기업개혁법(Sarbanes

Oxley Act)을 제정하도록 하였고, 뉴욕증권거래소도 새로운 규제를 규정하는 등 재빠른 대응을 보였다. 기업개혁법의 주요한 포인트는 ① 감사위원회는 모두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② 감사위원회는 행동을 규정하는 헌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 ③ 감사위원회에 재무전문가를 1인 이상 두어야 할 필

요가 있으며, ④ CEO(최고경영책임자)나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증권거래위원회에 선서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것 등이다.

(2) 영국

영국의 경우에는 사외이사(Independent Director)라는 용어보다는 비집행이사(Non-Executive Director)라고 하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외이사에 관한 최초의 대규모적인 조사는 1976년 브록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고 한다.

그 후 기본법인 1985년 회사법의 성립 등을 거쳐 영국에서 본격적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폴리 펙(Polly Peck) 사건이나 맥스웰 커뮤니케이션(Maxwell Communication) 사건 등의 유명기업의 불상사를 거쳐 1992년에 캐드베리위원회(Cadbury Committee)가 그 보고서를 공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캐드베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기업 경영자, 런던증권거래소, 잉글랜드 은행, 학자 등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세계를 향하여 기업통치의 견해를 나타낸 점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① 이사회역의 역할, ② 사외이사의 선임, ③ 감사위원회의 설치, ④ 회계감사 등에 대하여 정리되어 있고, 1973년 런던증권거래소는 동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를 상장규칙화 하였다.

그 후 1995년 높아지는 경영자보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수용하여 그린베리위원회(Greenbury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이사 보수의 결정방법의 재검토와 보수에 관한 정보공시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또 런던증권거래소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범의 준수상황을 상장규칙화 하였다.

더욱이 1998년 햄펠위원회(Hampel Committee)의 보고서(Report of the Committee on Corporate Governance, Final Report, 1998)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기업지배구조규범의 적용에 대해서 보다 유연성을 가지게 한 내용이 되었다는 점으로 보고서 자체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집대성한 형태였다. 이를 수용하여 런던증권거래소는 지금까지의 3개의 보고서에서 규정하는 규범을 통합하였다. 이것은 Combined Code라고 불리며,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첨부되었다. 즉, 상장기업은 1998년 12월 이후에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연차보고서에서 Combined Code에 대한 준수상황을 공시할 것이 요구되게 되었다.

1999년에는 독립한 내부감사조직의 설치의 강제나 내부통제에 관한 공시의 충실에 대하여 턴블보고서(Turnbull)가 발표되었다. 이 위원회의 권고로서 보고서의 내용이 통합범위에서 짜여졌다.

또한, 2002년 미국의 엔론 사건을 발단으로 Higgs 위원회가 설치되고, 2003년에는 「사외이사의 역할과 효과에 관한 검토("Review of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non-executive director")」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그 보고서의 권고에 입각하여 통합규범을 개정하고 공포하였다.

(3) 일본

일본에서 사외이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1970년대 이후 사외이사가 구미(歐美)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외이사제도가 바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이는 상법에서 그 설치

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감사가 있는데 굳이 사외이사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주주나 모회사가 추천한 비상근이사나 사장이 비상근이사로 임명한 친족, 지인 등은 사외이사라고 불러도 무방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으면 발언이나 조언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사 측이 만든 원안에 찬성하는 것만으로 회사 경영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업적부진, 구조조정대책, 환경문제, 제조물책임 문제, 기업의 범죄 및 부정행위 등 종래의 경험만으로 모두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면서 기업경영자는 타기업의 최고경영자, 유명인, 변호사, 학자 등을 사외이사로 초빙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들은 어디까지나 경영자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 회사 경영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미국의 사외이사제도에 가까운 위원회등설치회사제도가 선택적이기는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고, 그 중 3개의 위원회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4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5개 기업이 종래의 감사역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등설치회사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사외이사의 역사가 2003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외이사가 목적으로 하는 회사경영을 체크하기 위한 제도는 감사역제도라는 형태로 이전부터 상법에 규정되어 몇 번 개정되었다. 이 감사역제도가 사외이사제도에 이르게 된 역사를 살펴보자.

일본에서는 1950년 상법 개정에서 감사역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높이려고 하였다.

이 당시의 개정은 미국의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당시

로서는 세계최고의 기업지배구조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의 상법 개정은 미국의 흐름과는 크게 달라졌고, 기업의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할 때마다 그 대응책으로서 시종일관 감사역제도를 강화하는 방침을 취해왔다. 일본이 이러한 감사역제도에 집착하여, 감사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침을 취해 왔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역할을 증대시켜 온 세계의 조류에서 크게 뒤처지게 되었다.

이에 1993년에 버블붕괴를 전후하여 기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미일구조협약에서 미국이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일본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에서는 상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었지만, 반대의견이 강해서 그 도입이 보류되었고, 그 대신 사외감사역제도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제도도 기대했던 만큼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감사역으로서의 적성보다도 지명도를 중시했던 것이나 경영감시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명이 충분히 의식되지 않았던 것 등에 원인이 있었다. 또 사외감사역에게는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장의 인사에 영향력이 없었고, 경영감시라고 해도 위법성의 관점에 한정된다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던 것도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 후, 최고경영자의 독주에 의한 이익공여 사건, 위법거래에 의한 회사의 손해, 대형 기업도산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자세가 문제시되었고,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그리고 드디어 2002년 상법에서 위원회 등 설치회사제도가 신설되면서 사외이사가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이 위원회 등 설치회사제도를 채택하면서 사외이사를 대폭적으로 확대시킨 기업은 50여개사가 되었으나, 강제법규가 아니므로 아직 대다수의 기업은 종래의 감사

역회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

사외이사제도가 도입·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났는데 이하에서는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1) 사외이사 선임회사 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11년 3월 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중심으로 '상장법인 사외이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1,752개사의 상장회사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는 161개사이며 사외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1,591개사로 90.8%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3월 31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함) 1,622개사가 사외이사 선임

<표1> 사외이사 선임회사 수

(단위 : 개사, %)

구 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계	
	2011.3	2010.3	2011.3	2010.3	2011.3	2010.3
상장회사 수	731	719	1,036	1,033	1,767	1,752
사외이사 선임회사 수	728	717	894	874	1,622	1,591
선임비율	99.6	99.7	86.3	84.6	91.8	90.8
미선임회사 수	3*	2	142**	159	145	161
미선임비율	0.4	0.3	13.7	15.4	8.2	9.2

* 일시적(1개사), 회생절차진행(2개사)으로 인한 미선임회사

**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코스닥 벤처기업 중 미선임

(2) 사외이사 수

2011. 3. 현재 1,622개 상장회사에서 3,152명의 사외이사가 선임(중복선임 포함)되어 활동 중이며 1사당 사외이사 수는 전년(1.95명)보다 소폭 감소한 1.9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나뉘어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2.38명,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1.6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년간 사외이사 수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사외이사 현황

(단위 : 개사, 명)

구 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전 체	
	2011.3	2010.3	2011.3	2010.3	2011.3	2010.3
대상회사수	728	717	894	874	1,622	1,591
사외이사수	1,731	1,705	1,421	1,399	3,152	3,104
1사당 사외이사수	2.38	2.38	1.59	1.60	1.94	1.95

- 2011년 3월 31일 현재 1,622개사의 상장법인에서 총 3,152명(중복선임 제외시 2,948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활동 중
 - 1사당 사외이사 수는 2010.3월보다 0.01명 감소한 1.94명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2010.3월과 동일(2.38명)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2010.3월보다 0.01명 감소한 1.59명

※ 상장법인 평균 사외이사 수 추이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90명	1.92명	1.99명	1.98명	1.95명	1.94명

○ 업종별 사외이사 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1사당 평균 사외이사 수는 금융업이 0.02명 늘어난 4.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제조업은 전년보다 1사당 평균 0.06명이 감소한 2.48명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은 1사당 평균 2.12명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이 1.62명(전년 1.63명), 벤처기업이 1.48명(전년 1.45명), 외국기업이 1.46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외이사 수 분포

사외이사가 1명인 상장법인의 비중은 46.3%(751개사)이며, 사외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의 비중은 21.8%(353개사)로 조사되었다.

<표3> 사외이사 수 분포

(단위 : 개사, %)

구 분	사 외 이 사 수										계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이상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58	35.4	213	29.3	116	15.9	71	9.8	70	9.6	728	100.0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493	55.1	305	34.1	74	8.3	16	1.8	6	0.7	894	100.0
전 체	751	46.3	518	31.9	190	11.7	87	5.4	76	4.7	1,622	100.0

※ 처리한 부분은 빈도수가 가장 높은 부분임. 이하 같음.

- 사외이사 1명인 상장법인의 비중 46.3%(751개사), 2010.3월에는 45.3%(721개사)
- 사외이사 3명 이상인 상장법인의 비중 21.8%(353개사), 2010.3월에는 21.2%(337개사)
- 유가증권시장은 2006년 이후부터 3명 이상 사외이사 선임 회사가 계속 증가 추세이나 코스닥시장은 2008년 이후 감소 추세

※ 3명이상 사외이사 선임한 상장법인 비율 추이

	'06년3월	'07년3월	'08년3월	'09년3월	'10년3월	'11년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7.6%	29.3%	32.7%	32.9%	33.5%	35.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8.6%	11.2%	12.8%	11.8%	11.1%	10.7%

(3) 사외이사의 인적사항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연령은 평균 57.4세로 전년(56.7세)보다 0.7세 많아졌는데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60.0세보다 2.6세 더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벤처기업의 사외이사가 평균 52.5세(전년 53.6세)로 가장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60대 사외이사(713명, 41.2%)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50대 사외이사(495명, 34.8%)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경상계열을 전공한 대학원이상의 학력의 57세 기업인 출신이 그 전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 사외이사의 전형
 - 경상계열을 전공한 대학원 이상 학력의 57세 기업인 출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만 60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만 54세)
- 학 력

<표4> 학력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전 체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2011.3	2010.3
대학원 이상	973	56.2	659	46.4	1,632	51.8	49.6
대학교	664	38.4	697	49.0	1,361	43.2	45.7
고등학교 이하	44	2.5	26	1.8	70	2.2	2.3
기 타	50	2.9	39	2.7	89	2.8	2.4
계	1,731	100.0	1,421	100.0	3,152	100.0	100.0

※ 최종학력 기준(중퇴자는 중퇴 전 학력 기준)이며 대학교에는 육·해·공군사관학교와 전문대를 포함하며, 기타는 학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 상장법인 사외이사 중 2명 중 1명(1,632명, 51.8%)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로 49.5%(2009년) → 49.6%(2010년) → 51.8%(2011년)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반면, 대학교 출신 사외이사는 46.2%(2009년) → 45.7%(2010년) → 43.2%(2011년)로 감소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대학원 이상(973명, 56.2%) > 대학교(664명, 38.4%)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대학교(697명, 49.0%) > 대학원 이상(659명, 46.4%)

○ 직 업

<표5> 직업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전 체		
	인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2011.3	2010.3
기업인	491	28.4	555	39.1	1,046	33.2	34.3
교 수	427	24.7	288	20.3	715	22.7	22.4
번호사	212	12.2	143	10.1	355	11.3	10.8
기관/협회/단체등	151	8.7	84	5.9	235	7.5	6.3
전직 공무원	154	8.9	67	4.7	221	7.0	7.0
회계사·세무사	93	5.4	84	5.9	177	5.6	5.4
연구원	39	2.3	22	1.5	61	1.9	2.1
언론인	32	1.8	28	2.0	60	1.9	1.8
기 타	132	7.6	150	10.6	282	8.9	9.9
계	1,731	100.0	1,421	100.0	3,152	100.0	100.0

※ 직업 구분은 전직과 현직을 포함한 것임.

※ 기타 : 명예직, 자영업, 의사 등 위 분류기준에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임.

- 상장법인 사외이사 : 기업인 1,046명(33.2%) > 교수(715명, 22.7%) > 변호사(355명, 11.3%) 순
- 기업인은 35.0%(2009년) → 34.3%(2010년) → 33.2%(2011년)로 감소하는 반면, 교수 21.8%(2009년) → 22.4%(2010년) → 22.7%(2011년), 기관/협회/단체 소속 사외이사는 4.7%(2009년) → 6.3%(2010년) → 7.5%(2011년)로 증가하는 추세

○ 전문가 그룹

<표6> 전문가 그룹 분포

(단위 : 명, %)

구 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전 체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2011.3	2010.3
재무·회계 전문가	318	18.4	180	12.7	498	15.8	15.6
법률 전문가	245	14.2	158	11.1	403	12.8	12.0

※ 재무·회계 전문가 : 상경계열 교수, 회계사, 세무사

※ 법률 전문가 : 법대 교수, 변호사

- 재무·회계 전문가 그룹 15.6%(2010년) → 15.8%(2011년)로 증가
- 법률 전문가 그룹 12.0%(2010년) → 12.8%(2011년)로 증가

○ 임기

<표7> 임기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전 체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2011.3	2010.3
1 년	160	9.2	60	4.2	220	7.0	6.3
2 년	397	22.9	111	7.8	508	16.1	14.3
3 년	1,174	67.8	1,250	88.0	2,424	76.9	79.3
계	1,731	100.0	1,421	100.0	3,152	100.0	100.0

- 3년(2,424명, 76.9%) > 2년(508명, 16.1%) > 1년(220명, 7.0%) 순
- 3년이 임기인 회사 수가 80.2%(2009년) → 79.3%(2010년) → 76.9%(2011년)로 감소한 반면, 2년 이하 임기인 회사 수는 19.8%(2009년) → 20.7%(2010년) → 23.1%(2011년)로 증가

○ 사외이사 겸직 현황

<표8> 사외이사 겸직 현황

(단위 : 명, %)

겸직 현황 구분	사 외 이 사 수		증 감
	2011.3	2010.3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개사 겸직	122	106	16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개사 겸직	34	22	12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각각 1개사 겸직	48	41	7
계	204	169	35

- 204명이 2개사 사외이사를 겸직
 - ※ 2개사 이내의 상장법인에서 사외이사로 활동 가능(상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3호)

(4) 사외이사 이사회 활동현황 및 보수현황

□ 2011년 3월말 현재 2010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기준으로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이사회 활동현황과 보수현황을 조사·분석함.

○ 사외이사의 평균보수

상장법인 평균보수는 24,037천원이었으며 이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평균보수는 29,579천원이었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평균보수는 18,44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 분석대상

<표9> 평균보수 분석대상

(단위 : 개사)

구 분	전 체	분석대상사	제외대상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669	651	18*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010	773	237**
계	1,679	1,424	255

* 유가증권시장 - 신규 또는 재상장법인, 회사정리절차개시 등의 사유로 자료가 없는 회사(14), 외국법인(4) 제외

** 코스닥시장 - 기준일 또는 2010년도 당시 사외이사 없는 법인 (178), 외국법인(10), 기타 사유로 공시자료가 없는 회사(48) 제외

<표 10> 사외이사 평균보수

(단위 : 개사, 천원)

구 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전 체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무보수	60	9.2	188	24.3	248	17.4
1천만 이하	58	8.9	228	29.5	286	20.1
1천만 이상~2천만 미만	133	20.4	126	16.3	259	18.2
2천만 이상~3천만 미만	130	20.0	140	18.1	270	19.0
3천만 이상~4천만 미만	131	20.1	63	8.2	194	13.6
4천만 이상~5천만 미만	60	9.2	17	2.2	77	5.4
5천만 이상~7천만 미만	60	9.2	10	1.3	70	4.9
7천만 이상	19	2.9	1	0.1	20	1.4
합 계	651	100.0	773	100.0	1,424	100.0

- 상장법인 : 1천만원 이하 286명(20.1%) > 2천만 이상~3천만 미만 270명(19.0%) > 1천만 이상~2천만 미만 259명(18.2%) 순,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248개사(17.4%)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133명(20.4%) > 3천만 이상~4천만 미만 131명(20.1%) > 2천만 이상~3천만 미만 130명(20.0%) 순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1천만원 이하 228명(29.5%) > 2천만 이상~3천만 미만 140명(18.1%) > 1천만 이상~2천만 미만 126명(16.3%) 순
- 사외이사 이사회 활동현황
- 상장법인 이사회 참석율 : 73.6%
 - 유가증권시장 이사회 참석율 : 82.0%
 - 코스닥시장 이사회 참석율 : 63.8%
- 분석대상 (12월결산 상장법인)

<표 11> 이사회 활동현황 분석대상

(단위 : 명)

구 분	전 체	분석대상	제외대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46	1,179	367*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363	1,010	353**
계	2,909	2,189	720

※ 사외이사 참석률(%) = 주주총회소집공고 참조(이사회 참석 횟수/이사회 개최 횟수 합계)×100

* 유가증권시장 - 신규 선임으로 인해 활동현황이 없는 사외이사 (352), 신규상장 등의 사유(6)로 자료가 없는 사외이사, 외국법인 소속 사외이사(9) 제외

** 코스닥시장 - 신규 선임으로 인해 활동현황이 없는 사외이사 (329), 신규상장 등의 사유(10)로 자료가 없는 사외이사, 외국법인 소속 사외이사(14) 제외

* 개인별 참석률 / 인원 수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2조원 이상 92.0% > 5천억 이상~1조원 미만 85.6% > 1조원 이상~2조원 미만 84.1% 순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2조원 이상 91.1% > 3천억 이상~5천억 미만 77.1% > 5천억 이상~1조원 미만 76.5% 순

II.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

1. 지배구조와 사외이사제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기업을 경영하고 통제하는데 필요한 제반정책과 절차를 의미하며 경영과 관련된 사람 및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말이다. 또한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감독하는 메카니즘으로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경영의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 법적, 제도적 절차와 경영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극대화 목적과 부합되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사회와 이사회, 그리고 감사위원회(감사)가 주로 담당하고 기업 외부적으로는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채권금융기관 등이 담당하며 M&A시장 역시 기업경영진에 대한 감시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은 1997년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이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와 자본시장의 취약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외환위기의 큰 축인 기업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금융의 부실은 기업부문의 무분별한 과잉중복투자와 함께 이를 위한 단기부채중심의 자금조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과잉중복투자는 기업의 지배주주 중심 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사외이사, 이사회, 감사 등의 내부감시기능과 기관투자자, 은행, 금융기관 등 외부감시기능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의 제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경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기능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지배주주를 비롯한 내부이사의 전횡 및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직무를 수행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조언 및 전문지식의 제공 등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견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제도는 1998년에 도입되었는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규정에서 상장회사의 이사 총수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한 것이 입법화의 시초이다. 이후 2001년 구 증권거래법에서 사외이사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이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 외에도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도 사외이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사외이사제도는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많은 기업이 기업과 무관한 제3자를 사외이사로 영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독립된 위치에서 경영을 감시·통제하게 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사외이사제도는 이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사외이사는 당초 상법상의 제도는 아니었고 구 증권거래법이 상장회사와 코스닥법인을 대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었는데 증권거래법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도입되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상

법 제382조 제3항)는 점을 빼고는 법적인 신분에서 상근이사와 다를 바 없다. 그 선임도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는 의미에서의 비상근이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법정의 이사수를 채우기 위해 두거나, 혹은 그룹차원에서 경영자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견제수단으로 지배주주가 파견하였던 바이고 실제의 기능은 미약하였다.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과거의 비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지배구조의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명목적인 존재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투자자들은 사외이사제도가 활성화되어 기업의 경영감시가 효율화되고 책임구조가 명확해지는 등 지배구조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사외」라는 용어가 상징하듯이 그 위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은 제도만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사외이사가 적극적으로 경영의사의 결정에 관여하는 한편, 회사도 사외이사의 기능을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2. 사외이사와 경영진과의 관계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회사의 업무 집행은 주주가 아니라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93조). 즉 이사회가 경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주주는 단지 법과 정관에서 정한 소정의 중대 이해사항에 관해서만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회사의 업무에서는 배제된 채, 투자자분의 소유자로서 경영과실의 배분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다수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같은 회의체기구를 경영주체로 한 이유는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경영인들 다수로부터 나온 지혜를 수렴하여 최선의 경영의사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한 이유이고, 주주가 원격해 있는 상태에서 극소수의 경영자에게 회사재산의 관리를 전담시킬 경우 그 경영자의 권한남용과 독선이 예상되므로 상호 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또 다른 이유이다.

사외이사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감독활동이나 기업가치제고의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Weisbach(1988)는 사외이사의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경영자교체가 기업성가에 연동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사외이사가 무능한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교체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orokhovich, Parrino와 Trapani(1996), Dahya와 McConnell(2001)은 사외이사가 많을수록 경영자 선임시 외부에서 영입하는 빈도가 높으며 외부 인사를 경영자로 선임할 경우 주가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을 보였다.

Yermack(1996)은 이사회 규모가 작을수록 또한 성과가 나쁜 기업일수록 경영자교체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Perry(2000)는 이사회의 성과가 기업성가에 연동될수록 경영자교체와 기업성가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였으며 이는 이사회가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할 보상유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갖는 회사경영의 핵심기관이다. 이러한 이사회가 사내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지배주주나 대표이사의 전횡을 막을 수 없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이사의 임명이 정실에 의하여 이뤄지기 쉽고 지배주주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경영의 전문성을 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지배주주를 비롯한 내부이사의 전횡 및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의 직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사항의 결정을 위한 조언 및 전문지식의 제공 등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통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하에서는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역할

가. 이사회의 활성화

사외이사의 역할은 종래의 사내이사로 인한 이사회기능의 형해화를 개선하여 이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특히 이사회의 핵심기능은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진을 감독하고 이사회 내에서의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한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경영진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가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들이 가지기 어려운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에서 나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사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는데 바로 이점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사외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 즉 경영진을 감시·감독함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하여금 이사회 내지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형식적 기관으로 전락한 이사회를 활성화시켜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를 적절하게 통제하자는 것이다. 사외이사는 이러한 감독을 통하여 경영진이 회사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계기도 종래 사내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로써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현실적으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를 참여시킴으로써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실효성 있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감시감독이 사외이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에게 특히 요구되는 것은 경영진에 대한 단순한 자문역할이 아닌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주주가치의 보호

사외이사에게 기대되는 또 하나의 역할은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외이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 및 수완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주가치를 보호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주란 어느 대주주나 특정의 주주가 아니라 주주 전체를 말한다. 업무담당이사들은 자칫 특정주주, 경영자나 다른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기 쉬운데 사외이사는 이를 막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의해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되고 이사회가 경영을 전담한다. 상법에서는 이 뜻을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상법 제393조 제1항). 그러므로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만으로 구성되므로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개별 이사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이 최고경영자 또는 지배주주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이사회가 주체성을 발휘하고, 이사들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최고 경영의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사는 상근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흔히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듯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는 회

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을 뿐, 이사회 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상근이사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등가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외이사는 자신이 회사의 경영의사를 결정하는 주체라는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 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자신의 창의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또한 법은 이사 개개인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회사에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행사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외이사의 기능

가. 회사의 이익보호

사외이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사외이사 모범규준 1.2).

1) 이사 위상의 현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데(상법 제382조 제1항), 거의 모든 상장회사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주도하는 지배주주가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가 이사를 선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외이사에 관한 한, 최근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이 매우 엄격해져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줄었으나, 다른 대주주나 거래은행 등 이해관계집단의 추천으로 선임되고 있어 사외이사 역시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어느 이해집단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사지위의 중립성

이사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더라도 주주의 대리인이나 주주의 대변자로 선임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기관으로서 선임되는 것이다(상법 제382조 제2항). 그리고 우리 법이 이사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사익을 초월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영리를 실현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상근이사, 사외이사를 막론하고 이사는 대주주나 일부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은 회사 자체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사는 항상 회사 자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배주주나 그 친인척에 대해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지배주주측에 유리하게 한다든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과도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하는 것 같은 행위는 다른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전형적인 행위이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또 지배주주나 같은 지배주주하에 있는 계열회사와 거래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거래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이사회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이사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감독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기여하여야 하고, 특히 상근이사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사외이사 모범규준 1.3).

1) 감독과 사외이사의 중요성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것과 더불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이다(상법 제393조 제2항). 여기서 이사란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상근, 비상근의 이사를 가리킨다.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근이사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므로 이사회가 이사를 감독한다는 것은 주로 상근이사를 감독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사회는 상근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되는데, 상근이사는 자신의 업무집행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이사에 대한 감독권은 사외이사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때에 비로소 실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2) 감독의 의의

「감독」이란 상하관계에서 상위의 직책을 가진 자가 하위의 직책을 가진 자에게 지휘하고 명령함을 뜻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이므로 대표이사도 당연히 이사회의 감독권에 복종하며, 대표이사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하므로 실제로 감독해야 할 주된 대상은 대표이사이다.

「감독」이란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에 관한 현황을 보고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이사나 기타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살피고,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며, 당연히 해야 할 사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수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감독해야 할 사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만이 아니다. 회사란 어디까지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이므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영리추구에 적합한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영리성에 비추어 합

리적이지 못할 때에는 역시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예컨대 불필요한 투자를 하려 할 때 이를 중단시키고, 거래처나 임직원에게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권리행사를 게을리 하는 경우 바로 권리행사를 하도록 독려하는 것과 같다. 요컨대 이사회와 감독권이란 대표이사나 상근이사들의 무능까지도 다스리는 권한이다.

3) 이사의 상호감시권

이사회와 감독권과 별개로 이사는 상호간에 감시의무를 지고 동시에 감시권을 가진다. 「감시」란 이사가 다른 이사들이 위법·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일을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말한다. 다른 이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이사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사회로 하여금 감독권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의 업무는 상근이사에 의해 행해지므로 감시의 대상 역시 주로 상근이사라 할 수 있다. 상근이사 상호간에도 감시의무를 지지만 이들 간에는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감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부정한 일을 할 경우 전무이사나 상무이사가 이를 만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감시기능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사외이사의 존재이유이며, 우리 법에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이유라고 하겠다. 대표이사 등 상근이사의 부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사외이사가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감시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다. 기업경영의 건전성 확보

사외이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사외이사 모범규준 1.4).

우리 법에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 가장 필요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사외이사에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외이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기업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Ⅲ. 사외이사의 선임과 해임

1. 사외이사의 선임

(1) 선임의무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참고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증권회사 등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아닌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5조).

* 사외이사 수의 산정기준

이사총수의 기준은 선임된 사외이사가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수를 말하며 사외이사의 산정은 소수점에서 절상. 즉,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이사 수가 5명인 회사가 1/4이상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중 사외이사가 2명이상 이어야 함.

다만, 상장법인 중 ① 자산 1천억 미만의 코스닥시장 주권상장 벤처기업, ②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③ 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한 정기주주총회 전까지의 신규상장법인, ④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⑤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

다(상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 현재는 비상장법인이지만 신규로 상장하려는 경우 사외이사의 선임 시기는?
 - ⇒ 비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면 상장 후 곧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됨(상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 ⇒ 벤처기업지정 해지 등으로 사외이사를 최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 주권상장법인의 상장요건(유가증권상장규정 제32조)에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항목이 없으며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나 지주회사 주권의 신주상장요건에만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이 있으므로 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함(유가증권상장요건 제53조 참조)

사외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하는데 2009년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과거 이러한 구분이 없던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수인의 이사선임을 위한 의안을 총회에 하나의 의안으로 병합 상정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의 선임을 여러 의안으로 구분상정하여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하면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두 사내이사로 등기할 수밖에 없다.

(2)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① 정관규정에 의해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

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시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③ 동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의결권 있는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자본금 1천억원 이상 법인은 0.5% 이상 보유)가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상법 제392조의2, 제542조의8 제4항·제5항).

대규모 상장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내이사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하면 된다(상법 제382조 제1항, 제542조의8 제1항).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특례감사위원회 적용)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이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3% 이상 소유한 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그러나 일반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사외이사를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상법 제415조의2 제2항)하는 점이 특례감사위원회와 다르다. 이하에서 부연설명하기로 한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또한 상법 제542조의8 제5항에 의거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5항).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0.5%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상법 이외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은 금융지주회사법(제40조 제2항), 은행법(제22조 제3항),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3 제2항),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보험업법(제15조 제2항) 등이 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정한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와 역할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규준 6.2 원칙).

- 모범규준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대체하며 이의 진전된 형태로 추천위원회 설치를 권고
- 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와 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추천

하고 이사회에 요청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

- 추천위원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사정에 정통한 사내이사와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함께 역할을 수행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외이사로 임명함.

(4)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은 사외이사 자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자격요건은 사외이사의 자격을 결한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자동적으로 그 직을 상실케 하고 있다. 상법은 제382조에서 일반 주식회사에 대한 결격요건을, 동법 제542조의8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로서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사외이사는 자격요건의 성격상 자연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 상법 제382조에 의한 결격요건(일반 주식회사)
 - ①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④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⑥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⑦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상법 제542조의8에 의한 결격요건(상장회사)

- ① 상법 제382조의 제3항(위의 일반주식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자
- ②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융관련법(상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⑥ 주요주주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⑦ 해당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해당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었던 자
- ▷ 사외이사 선임시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거나 해당 회사의 비상근이사이거나 비상근이사로 재직했던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 가능
- ⑧ 해당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⑨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⑩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⑪ 다음과 같이 해당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 제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 감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 ▷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해당 회사가 자본금(해당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 ▷ 해당 회사와 기술제휴계약 또는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 ⑫ 해당 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 ⑬ 해당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사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

- 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기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 ⑭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에 의한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 ⑮ 해당 회사와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그 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를 제외)

*** 특수관계인의 범위(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6촌 이내의 혈족
 - 다. 4촌 이내의 인척
 -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이사·감사
 -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감사
 -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감사
 -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감사

*** 계열회사의 의미**

20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동일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로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 상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의 '자문계약, 자문용역' 의 의미**

자문계약과 자문용역의 의미는 법인(당해회사)과 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과 공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서에 의거 자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된다.

☞ 과거 계열회사의 임원(2년 미경과)이었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 사외이사 결격요건은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계열사 임직원의 사외이사 결격요건과 관련, 사외이사 선임시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라면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이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과 감사업무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회사와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은 당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당해 회사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감사위원회의 대표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상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상법은 사외이사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결격요건을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이 전문성을 이유로 일부 직역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고 회사의 특성에 따른 적극적 요건을 달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등 일

률적인 설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만일 적극적 요건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정관이나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등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원칙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사외이사의 해임

사외이사도 그 신분은 이사이므로 해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사는 가장 보편적으로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고 언제든지 단독행위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사임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285조 제1항).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도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한다는 식으로 달리 이사의 해임방법을 정할 수 없다.

(1) 사외이사 결원에 따른 충원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법정 사외이사의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법정 사외이사 수를 충족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3항).

사외이사의 퇴임사유가 임기만료의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예상된 궤위로 인하여 사외이사 구성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이사회 의 구성요건의 최소원수인 3인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최소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사외이사 선임·해임·중도퇴임관련 공시·신고사항

가. 사외이사 선임·해임·중도 퇴임시 신고

주권상장법인인 사외이사가 선임·해임 및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의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제3항). 그러나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2)에 의해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만 신고하면 된다.

각 공시사항은 금융위원회의 DART시스템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거래소의 KIND시스템에도 신고가 되므로 신고는 한번만 하면 된다.

사외이사의 선임·해임·중도 퇴임시 신고

대상처	신고·공시사항	공시시한	근거법규
금융위	선임·해임	주주총회 결의시(익일)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퇴임(임기만료외 사유)	사유발생시(익일)	
거래소	선임*	주주총회안건 확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당일)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제7조제1항제3호가목
	해임	주주총회 결의시(익일)	
	퇴임(임기만료외 사유)	사유발생시(익일)	

* 거래소의 공시규정상 “사외이사의 선임”은 별도의 공시사항이 아니고 “주주총회 소집결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 해당 안건이 있는 경우 이를 구분·명기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공시시 선임결과가 포함됨(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라목)

*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만 공시하면 됨(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한편 사외이사가 중도에 사임 또는 해임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으나 이는 주주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합리성은 인정되나 중도사임의 주체인 사외이사 개인(수임인)의 주관적인 사유를 회사(위임인)가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중도에 사임 또는 해임하는 사외이사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공시할

경우 개인정보 및 회사정보의 유출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주총소집시 이사후보 관련 사항 통지·광고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이사·감사의 선임시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광고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이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처럼 사외이사의 선임시 후보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지·광고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로 상장회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들에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사외이사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등을 통지·광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 전자공시형태로 공시되고 있다.

(3) 사외이사 선임절차 등 위반시 제재조치

가. 상법상의 제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법 제635조 제3항).

1.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의무(이사총수의 1/4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3인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를 위반한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미설치 및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법 제542조의8 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외의 자를 선임하거나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의 제재

사외이사 수 미달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1조).

- 관리종목 지정 및 1일간 매매거래정지(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 제1항 제7호 가목·나목, 제95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7호)
-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일 익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 및 당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정수를 충족한 후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주주총

회일 익일(다만, 주총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일 익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 및 당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 관리종목 지정해제(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7호)
 - 상장법인이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의무선임 비율을 충족한 경우 주주총회일의 익일(다만, 주총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일 익일)에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 상장폐지 예고(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0조)
 - 사외이사 수 미달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때까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 상장폐지(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 제1항 제10호 가목 내지 다목)
 - 최근 2사업연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선임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때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최근 2사업연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수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사외이사 수 미달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 수가 선임의무 비율에 미달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상장을 폐지한다.

3. 사외이사 선임관련 실무상 절차와 방법

사외이사의 선임절차는 사내이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기타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의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542조의4 제2항 및 제3항).

(1) 사외이사 후보자의 물색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법정 인원수에 유의하여 회사의 전략방향과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대상자를 물색한다.

참고로 사외이사 1인은 2개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선임이 가능하다.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

사 또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한다(상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3호).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선임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업들의 사외이사 후보는 대부분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과 연관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단을 구성하거나 사외이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는 외부기관의 사외이사 후보추천(3배수 또는 4배수)을 통한 인력풀의 활용을 한다면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사외이사 인력풀이란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 및 자질을 갖춘 적정 인력을 개발·확보하고 이들의 상세한 인력정보를 DATA BASE화하여 이를 각 회사에서 사외이사 선임시 활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인력풀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998년 12월 중순부터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설치·운영하여 온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일하다. 동 협의회에서는 인력뱅크를 구축하여 DB화하고 있고 직종별, 나이별, 학력별, 경력별 등으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 있으며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씩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력풀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은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우수기업 선정 등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 인력풀 운영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을 통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

임할 수 있다.

동 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외이사 인력풀에 등록된 자를 경력별로 분류하면 i) 전·현직 기업대표 및 임원 417명, ii) 전·현직 연구원 및 공무원 등 59명, iii) 대학교수 172명, iv) 변호사 60명, v) 공인회계사·세무사 101 등 총 80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외이사 인력뱅크(<http://www.outside-director.or.kr>)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 1998년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자 **809명이 등록(2011.9월말 현재)**, 공개법인 등에 추천하고 있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1/2이상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때 주주제안권을 갖는 소수주주가 추천한 자는 반드시 사외이사 후보에 포함시켜야 한다(상법 제642조의8 제5항).

(3)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회사의 내부자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시 소집통지기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총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익일까지 주총 예정일시, 주총 예정 장소, 의안(주요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외이사 및 감사의 이사회 참석여부도 병기하여야 한다.

(4)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및 공고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시 총회일의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아울러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의 후보자의 성명, 역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4 제2항).

또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사외이사 그 밖의 해당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와의 거래내역, 영업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4 제3항).

(5)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및 선임

사외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선임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사선임의 건'으로 하여 보통결의로 선임하면 된다.

(6) 주주총회 결과의 공시 등

상장법인은 주총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당일공시) 그 결과(주주총회 의안 및 의사록, 영업보고서 등)를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55조 제4호).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주주총회 개최결과 공시와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에 관하여 간략하게 공시된다. 즉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사외이사 현황, 소유주식수 등이 공시된다.

(7) 사외이사 선임의 등기

사외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183조).

IV. 사외이사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

사외이사는 법적으로는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 게 인정된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내이사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위임관계(동법 제382조 제2항)에 있으므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1. 사외이사의 권한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여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업무담당이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업무담당이사의 권한 가운데 업무집행권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업무담당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우리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주된 취지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의 강화에 있으므로 사외이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이사회 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과 대표이사 등 업무담당이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 제2장 3.2(사외이사의 권한)에서도 사외이사가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이사회 의 감독기능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권한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사외이사의 기본적인 권한으로 ① 이사회에 의 출석권과

의결권,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권 및 이사회에 감독권행사에 참여하는 권한이 있고, 위의 기본적인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하여 ① 이사회의 소집권(상법 제390조 제1항), ② 대표이사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상법 제393조 제3항), ③ 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④ 회사의 장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 ⑤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서술한다.

(1) 의결의 중요성

우리 상법은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다수의 성실한 이사들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선의 경영의사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결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무엇이 회사에 대해 최선이나 하는 것을 신중히 그리고 정확히 판단하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현해야 함은 물론이다.

(2) 이사회 출석의 중요성

의결권을 행사하자면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 역시 이사의 중요한 직무이다. 하지만 이사회에의 출석은 결의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

사회에서는 결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도 하며 각종 사안에 관하여 보고도 받고 질문도 한다. 이러한 토론, 질문, 보고수령은 이사회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이사가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 질문을 통해 경영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의식하게 되고 업무수행에 관해 긴장을 하게 되므로 이 자체가 훌륭한 경영감시가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사회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경영자는 경영감시를 의식한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통지를 통해 이미 공시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를 수시공시와 같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의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공시토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사외이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고 이와 같은 활동내역의 과도한 공시 등 간접강제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취임을 기피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3) 사외이사의 출석, 의결의 중요성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상근이사들은 항시 대면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들의 업무집행에 타성이 생긴다. 따라서 상근이사들만으로는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대표이사실에서 경영회의를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사외이사는 경영에서 다소 원격적인 입장에서 있으므로 상근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신선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 따라서 비판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사외

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은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외이사는 상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사외이사의 직무의 전부라는 점도 사외이사가 명심하여야 할 일이다. 상법은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이사회 출석률을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에 기재하거나 당해 법인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4 제3항).

그러므로 사외이사는 이에 의해 자신의 출석상황이 주주와 투자자들에 의해 평가받고 있음을 유념하고 이사회 출석을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출석과 의결권 행사의 방법

가. 서면결의의 불가

이사회 결의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를 다루므로 여러 가지 변환이 가능한 의안을 놓고 상호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최적의 결론을 내어야 하는 집단적 의사결정(collective decision-making)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결재를 하듯이 이사회 의사록을 회람하여 각 이사들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거나, 회사의 직원이 이사들을 방문하여 서명을 받아오는 것과 같은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사들이 동시에 한 장소에 집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법은

동시에 음성이 가동되는 방법으로 회의하는 것은 허용한다(상법 제391조 제2항).

나. 비밀투표의 불허

이사는 회사의 최고경영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자이니 만큼 자신의 권한행사는 고도의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입장이 거북하다는 이유로 비밀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한편 이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결의내용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하였는가가 밝혀져야 하는 점이 비밀투표를 허용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이유이다.

다. 의결권의 동가성

주주총회에서는 지분주의를 취하여 1주당 1개씩의 의결권이 주어지지만, 이사회에서 이사의 의결권은 이른바 두수주의에 의해 이사 한 사람에게 대해 한 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이 점은 예외가 없다. 설혹 정관으로 이사의 의결권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흔히 정관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위에 말한 이사회의 의결권의 배분원칙에 어긋난다. 가부동수인데 의장이 결정한다고 함은 의장이 2개의 의결권을 가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이다.

라. 의결권행사의 적극성

사외이사들은 국외자(outsider)라는 생각에서 이사회에서의 발언이나 표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예가 많다. 예컨대 “여러분의 의사에 따르겠다”라든지, “잘 모르므로 기권을 한다”는 것과 같다. 만일 모든 이사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이사회 결의는 불가능하다. 상근이사이든 사외이사이든 이사들은 모두 동등한 지분으로 결의에 참여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것이 요망된다.

상법은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안에 반대한 자와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이는 사후의 책임을 의식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과 아울러 신중을 요할 것을 요구하는 정신을 표명한 것이다. 한편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의안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한 내용,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하거나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542조의4 제3항), 이에 의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이 주주와 투자자에 의해 주목받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5) 이사회결의의 금지

이사가 의결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과 같이 이사회 결의사항은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나 어느 특정의 이사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사안이 복잡할 경우 “좀 더 조사한 후에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한다”는 식으로 위임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위법이다.

(6) 이사의 감시권

이사의 감시권 역시 이사의 기본적인 직무이다. 이사 상호간의 감시 특히 상근이사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에 의해 회사의 경영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감시”라 해서 줄곧 다른 이사들의 행동을 추적하라는 뜻이 아님은 물론이다. 법에서 요구하는 감시란 회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것이 없는 지를 관찰함으로써 위법, 부적정을 예방하고, 혹 그러한 것이 발견될 경우 시정하라는 뜻이다.

구체적인 감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갑 이사는 회사의 유동자산이 급속히 감소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회계담당이사에게 그 원인을 문의해 본 결과 대표이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불필요한 부동산을 다량 매수한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이같이 회사의 이상상태를 감지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행동이 바로 감시이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를 바로잡는가? 이사들은 모두 등가의 권한을 가지므로 갑 이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대표이사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갑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이사회가 감독권을 발동하여 대표이사에게 부동산의 매수를 중단시키거나 매각하여 유동자산의 확보를 지시하도록 제안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이사의 감시권은 궁극적으로는 이사회의 감독권발동으로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7) 부수적 권한

이사의 의결권과 감시권 그리고 이사회를 통한 감독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권한도 주어져 있다.

가. 이사회 소집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사가 감시권을 행사하여 이사회 감독을 요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원래 이사회는 이사 각자가 소집할 수 있으나,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소집권자를 정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1항). 많은 회사들은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사회 의장이나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권자를 따로 정한다고 해서 그만이 배타적으로 이사회 소집권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소집절차를 관장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또는 이사회가 정한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소집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나, 소집권자가 소집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그 요구하는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설명요구권

이사가 의결권과 감시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에 관한 정보가 충실하여야 한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정보부족이 결정적인 취약점이므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갖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사는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대표이사
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게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고 특정 사안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노력
을 하여야 한다. 이사의 정보요구에 대해 상근이사는 회사의 기밀
임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 대신 정보를 요구하
여 설명을 들은 이사는 그 정보를 자신의 판단과 직무수행에만
이용해야 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 회사의 장부 등 주요 서류열람권

이사는 당연히 회사의 장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장부나 중요서류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사는 자신의 직무에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을 요구하
여야 하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열람을 요구한다면 권한의 남용이
다.

라.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등 각종 소 제기권

상법은 이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각종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구를
구성하는 인물이므로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조직구성에 위법, 부당
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의무를 지므로 그 수단으로서
소 제기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사가 갖는 소 제기권을 몇 가지 열
거해 보면, 주주총회결의에 위법, 불공정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취
소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또는 주주총
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상법 제376조, 380조),
신주발행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상법 제429조), 자본감소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감사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상법 제445조), 합병이나 회사분할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합병무효의 소 또는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29조, 제530조의11 제1항).

마. 기타의 권한

1) 정보접근권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원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경영자에 대한 감시·감독활동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구조나 업무현황 그리고 사업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사 특히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전략적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의 경영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정보접근권이 매우 중요하다. 사외이사가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업무담당이사나 임원이 제공하는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 사외이사의 정보접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영업보고의무를 부과하거나 업무담당이사 또는 상업사용인에게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사에 대한 보고요구권과 회사의 업무·재산상태의 조사권(상법 제412조 제2항)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업무결정기능 또는 이사회의 이사에 대한 감독기능 등

에 의해 이사 개인에게도 정보 접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사외이사는 법 규정에 의해, 그 밖의 사외이사는 법해석에 의해 정보접근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에서도 상근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이사회에 감독기능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 4.2).

2) 전문가의 조력권

상법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5항). 이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회계전문가나 법률전문가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을 인정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이외의 다른 위원회나 사외이사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감독활동을 수행함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주된 이유는 경영자의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나 사외이사로 하여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회사의 내부조직에 속한 구성원 또는 외부의 고문이나 자문가 등은 대표이사(최고경영자)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조력을 받을 때에는 상당한 한계가 따른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최고경영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언 또는 자문을 하도록 유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사외이사의 의무

(1) 일반적 의무

우리나라 상법은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외이사는 그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 사내이사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외이사도 상법상의 이사이므로 일반적인 의무로서 상법 제 382조 제2항의 선관주의 의무와 동법 제382조의3에서 규정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가. 선관주의 의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가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이사선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는 법상 이사의 의무로 규정된 직무의 수행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행사, 제소권, 기타 법상 명문화된 권한 행사에도 미치며, 상근·비상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이사에게 주어지는 의무이다.

미국에서는 이사의 선관주의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개정모범회사법(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RMBCA)§8.30에 있으며, 이 조항에 의하면 이사는 ① 임무를 성

실행(in good faith) 수행하고, ②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그가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으로 그 의무를 수행하며, ③ 경영 정책결정과 감시기능(decision-making and oversight functions)을 수행함에 있어서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여건에서 합리적으로 적절하다고 믿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충실의무

이사의 충실의무는 1998년 개정 상법에서 제382조의3을 신설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실의무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회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믿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사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의무이다. 따라서 충실의무는 주로 이사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사의 행위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또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였느냐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사외이사도 이사회에 구성원이므로 당연히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비교하여 공정성에 반하는 경우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 공개회사의 사외이사들이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어 다투어진 경우는 그들 자신이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소수주

주에 대하여 지배주주 때로는 CEO나 다른 내부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의사결정을 한 경우였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만약 회사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희생시킨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제소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사외이사가 회사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외이사가 비록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거나 이사회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충실의무에 위반될 수도 있다.

(2) 사외이사의 구체적 의무

가. 보고의무

1995년 개정 상법에서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상법 제412조의2).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는 자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에 한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모든 이사이며, 그러한 사실의 발생에 관여한 이사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이사도 그 사실을 발견한 이상,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할 사실을 발견한 이사가 감사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먼저 보고하고 감사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 이사 전원이 보고의무를 지게 된다.

이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모든 업무집행과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 한한다.

이 때 이사의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보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고, 감사가 수인이면 그 중 1인에게 보고하면 충분하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1인에게 보고하면 충분하다. 보고의 시기는 발견한 즉시 하여야 한다(상법 제412조의2).

이사가 이러한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제399조, 제401조).

나. 감시의무

이사의 선관의무에 따른 각종 구체적인 의무의 하나로서 이사들은 상호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사의 「감시의무」는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다. 실정법상으로는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사의 감독권」(상법 제393조 제2항), 「감사의 감사권」(상법 제412조 제1항)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이다. 하지만 학설·판례는 이사회에 감독권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왔다. 2001년 개정법은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상법 제393조 제3항), 이사의 권한은 동시에 이사의 의무로 이해하므로 이 규정 역시 이사의 감시의무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시의무는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가 서로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업무담당이사(사외이사 또는 비상근이사)의 경우에도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개별

적으로 회사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다른 이사에 대하여 감시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린다. ①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비업무담당이사에게 그러한 감시의무가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일본의 소수설), ②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선관의무를 가지며, 이사 개인에게 감시의무를 부과하면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이사회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의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직무에 관계없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는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경업금지의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겸직금지의무)고 규정하고 있다.

금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로서 회사가 실제로 행하는 사업과 시장에서 경합하고, 회사와 이사간의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의미하며 정관에 기재

된 회사의 목적 사업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된 거래도 포함한다.

사외이사도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겸직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사외이사는 비상근의 이사로서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와 동일한 정도의 겸직금지의무를 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사외이사 역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안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므로 당연히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도 자기가 이사로 있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라. 자기거래금지 의무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재산양수, 양도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의 한 예이다. 하지만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재산양수, 양도 등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 한다.

자기거래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법 제398조의 입법 취지가

회사의 이익과 채권자의 보호에 있으므로 회사의 이익을 해하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 내지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충돌이 가능한 거래에 한하며, 행위의 성질상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염려가 없는 거래행위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

자기거래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이사는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구별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외이사도 자기거래가 금지된다.

만약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거래를 한 경우 그 사외이사는 회사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이러한 자기거래금지에 대한 특례 조항이 2009년 개정상법에서 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상장회사에 대해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사(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 포함), 감사와의 신용거래(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금지하므로(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이사회에 승인이 있어도 이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전 대여 등은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542조의9 제2항).

나아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소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542조의9 제3항). 다만 당해 법인의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금융기관의 약관에 의한 거래, 이사회에서 거래 총액을 승인한 경우 등은 이사회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동법 제542조의9 제5항).

마. 기업비밀 준수 의무

영업비밀이란 기업조직 또는 사업에 관한 공지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당해 기업이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기업 또는 제 3자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 즉, 기업비밀은 회사가 배타적으로 누리는 권리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상법 제38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1년 개정상법 이전부터 해석상 인정되던 비밀유지의무를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면서 그 남용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문화한 것으로, 이사의 회사 재산 관리에 있어 선관주의의무의 일부로서 규정된 것이다.

기업정보와 관련하여 이사가 회사에 줄 수 있는 불이익의 유형별로 첫째 기업비밀을 지킬 의무(수비의무), 둘째 기업비밀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을 의무(비밀이용금지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비의무는 이사가 자신이 지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타인에 의해서도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로 무엇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기업비밀인지의 여부는 이사가 경영자로서의 성실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밀이용금지의무의 대표적인 예는 자본시장법상의 내부자거래로, 이사가 공개되지 아니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게 한 때에는 벌칙을 적용되며(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6월내의 단기매매로 차익을 얻은 때에는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동법 제172조). 이와 같은 특별법상의 제재와 관계없이 내부자거래는 상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3. 사외이사의 책임

일반적으로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되고, 상법이 특별히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의 책임발생 원인은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대한 위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법은 이사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를 차별화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이사의 책임이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나 또는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여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연대책임을 지도록(상법 제399조 제2항, 제3항) 하고 있어 책임부담에서는 사내이사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1)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원래 이사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 간의 위임관계에 기초하여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위임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이 이러한 책임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책임은 이사의 지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법이 특

별히 인정한 책임이라는 특별책임설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이러한 책임은 이사가 수임인의 지위에서 위임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한다.

또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은 첫째,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와 둘째,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이다.

임무해태의 경우에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책임으로 보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과실책임인지 과실책임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고, 무과실책임으로 보게 되면 책임이 과중하여 유능한 경영인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상법 제399조의 이사의 책임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특칙으로 보아 과실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게 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므로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사에게 있다고 보인다.

(2)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제401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399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가 임무해태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는 제3자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개인적으로 직접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상법 제401조에서는 이사의 개인재산을 회사의 책임으로 확대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지배주주인 이사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그 결과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이해관계인은 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상법 제401조에 의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외이사의 임무의 해태는 주로 조사 의무를 해태하거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는 경우이므로 사내이사에 비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외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게 되면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지며, 특히 연대책임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록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외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외이사는 손해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법 제401조의 책임의 성질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대립된 견해가 있다. ① 법정책임설은 본조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으로 불법행위와는 무관한 법정책임으로 본다.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있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그 결과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일반불법행위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경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활동은 이사의 업무집행에 의하고 상법은 이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특별히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즉 일반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존재해야 하고 이를 제3자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상법 제401조의 악의·중과실은 임무해태에 대하여 존재하면 족하고 위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제3자를 보호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이사 개인의 행위가 민법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본조의 요건으로 충족시킨다면 이사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본조의 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은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

제3자의 손해는 직접손해이든 간접손해이든 이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주주도 포함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본다.

② 특수 불법행위책임설은 상법 제401조의 책임은 본질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지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요건(민법 제750조)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강화한 특수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특수한 불법행위의 일종이라고 본다. 즉 본조는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수정하여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경과실을 배제하여 인정한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이사의 임무해태에 관하여 악의·중과실이 있으면 충분하며, 제3자의 손해는 직접손해이든 간접손해이든 이를 불문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경합관계에 있으며,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본다. 제3자에게는 주주도 포함되며 책임의 주체는 사외이사는 물론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도 포함된다.

위의 어떤 견해를 취하든 상법 제401조의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경합하게 되고, 다만 그 시효에 있어 차이가 있게 되는데, 본조에서는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악의 또는 중과실을 제3자에 대해

서가 아닌 회사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점, 경과실이 배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감사위원으로서의 책임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에서는 감사위원의 책임에 대하여 감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의 책임에 대해 보면, 먼저 감사와 회사 간에는 위임관계가 있으므로, 감사가 위임인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 감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 제1항). 또한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동조 제2항). 위의 두 경우에 이사도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법 동조 제3항).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회의체 기관이기 때문에 단독기관인 감사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감사위원회는 회의체 기구이므로 감사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감사위원회 대표가 이를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집행한 대표위원 뿐 아니라 그 결의에 찬성한 위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상법은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제414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감사사안에 대하여 임무의 해태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을,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399조 제2항과 제3항의 책임을 지는 것을 유추해석하여 감사사안에 대하여 찬성한 이사에게도 상법 제414조의 제1항 또는 제2

항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는 이사로서의 책임 뿐 아니라 감사위원으로서의 책임도 동시에 지게 된다. 물론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구체적으로 고려될 문제이지만, 이사로서 회사전체에 대한 업무의 감시의무를 가지고 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도 함께 부담하는 것은 과중한 책임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선관주의의무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동일한 업종의 동일한 지위에 있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에게는 회계감사의무가 가장 절대적인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는 회계감사에 우선적으로 구속되고 감시의무는 차후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사외이사의 책임완화

현행법상 사외이사의 책임완화의 방법으로는 ① 이사의 책임면제, ② 회사의 손해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하는데 이때 이사의 기여도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고려하는 공평부담 원칙, ③ 이사의 충실의무의 위반에 관한 소송을 당하였을 때 결국 이사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일정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이사에 대한 회사의 손해보전, ④ 이사가 소송에 패소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이를 보전해주는 임원책임보험 등이 있으나 이 중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만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

400조). 그러나 주식이 널리 분산된 상장회사에서 총주주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상법 제400조는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였다. 실제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사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판례들이 등장함에 따라 학계에서는 상기의 규정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사의 책임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여왔다.

여기서 이사의 책임제한제도란 현실적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현행 상법 제400조와 달리 총주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감경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법무부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5년부터 마련한 상법개정안에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2011 개정상법에서 이 제도가 입법화되어 2012. 4.부터 시행된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상법 제400조 제2항 신설).

이를 위해서 회사는 정관에 이러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이사가 불법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경우나, 상법 제397조의2(이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및 상법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

래)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상법이 이사의 책임감경을 법제화한 것은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완화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이사의 진취적인 경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책임보험의 위기와 사외이사의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급증하는 대표소송에서 이사를 거액의 책임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사의 책임제한 입법이 도입된 바 있다.

이사의 책임제한제도는 이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해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되, 형평과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 책임법제의 구축에 필요불가결한 제도이다.

사외이사들의 책임에 관련해서는 주로 이사회의 현안에 관한 적법성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사외이사들이 모두 법률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비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사들이 모두 법률문제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질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사외이사들이 법을 몰랐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느냐가 책임유무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외이사는 이사회 결의내용이 적법한 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며, 복잡한 법률문제가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두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사외이사와 소송

상법은 이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구를 구성하는 자이므로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조직구성에 위법,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의무를 지는 수단으로서 소제기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사가 갖는 소제기권을 열거해 보면, 주주총회결의에 위법, 불공정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또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상법 제376조, 380조), 신주발행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상법 제429조), 자본감소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상법 제445조), 합병이나 회사분할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합병무효의 소 또는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29조, 제530조의11 제1항).

(1) 위법행위 유지의 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2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5항).

(2) 회사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①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상법 제399조 제1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99조 제2항).

(3) 제3자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01조).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99조 제3항).

(4) 주주의 대표소송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상기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6항).

(5) 이사 해임의 소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6)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관한 소

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나.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부존재확인 소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상법 제380조).

(7) 신주발행 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29조).

(8) 감자 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9) 합병 또는 분할 무효의 소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합병무효의 소는 상법 제528조의 합병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V. 감사위원회제도와 사외이사

1. 감사위원회 구성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란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이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그 기능면에서는 기존의 감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회사 조직면에서는 감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인데 반해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하나에 불과하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상법 제393조의2에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415조의2에서는 일반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11 내지 12에서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감사위원회는 다시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상장회사에 적용하는 이른바 일반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9 제1항 단서)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강제되는 특례(엄격)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1 이하)로 구분된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가 상근감사에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본문). 특례감사위원회가 일반감사위원회와 다른 점은 감사위원의 자격과 선임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지배구조란 기업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데 현행 상법은 일

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일반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이사이거나 사외이사(사외이사로서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로 선임되어야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일반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특례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감사위원회의 자격요건에 더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그리고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상근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일반감사위원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사외이사들 중에서 일부(3명 이상의 이사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를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그러나 특례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3명 이상을 다시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점이 일반감사위원회와 다르다(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및 제542조의12 제2항).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 상장회사가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상법은 ①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 이하 '일반감사위원회'라 한다)와 ②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대규모상장회사라 한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1 및 동 542조의12, 이하 '특례(엄격)감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상법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중규모상장회사라 한다)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거나 이 절(상장회사 특례에 관한 상법 제4장 제13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례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2011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가 상근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는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문을 둬으로써 해결하였다(개정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다만 개정상법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일반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개정상법의 어디에도 경과조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규모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감사위원회는 일반감사위원회이면 가능한지 아니면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게 된 배경은 구 증권거래법에 있던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관련 규정이 증권거래법의 폐지로 인하여 상법으로 이관되면서 문구에 대한 해석차이로 발생하였다. 즉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를 개정상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근감사에 대신하는 감사위원회를 입법취지에 맞도록 특례감사위원회로 하려면 “이 법에 의하여”를 “이 절에 의하여”로 고쳐놓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 아니하고 개정상법에서도 “이 법에 의하여”로 종전과 같이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이 법”이란 증권거래법을 말하는 것인데 개정상법에 와서는 “이 법”이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잘못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1 개정상법에서는 문제의 “이 법”을 “이 절”로 바로잡았던 것이다.

이로써 중규모 상장회사가 상근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11 내지 542조의12에 따른 특례(엄격)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해석상 논란이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러한 중규모의 상장회사가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일반감사위원회가 아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11 및 동 제542조의12에 따른 특례(엄격)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상장회사가 규모별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상장회사 규모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상장회사 규모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비고
최근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없음 - 상근감사를 두더라도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을 미적용 	소규모 상장회사
최근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며 상법 제542조의11 및 12에 따른 특례감사위원회를 둘 경우 상근감사에 갈음함 	중규모 상장회사
최근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적으로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법 제542조의11 및 12의 규정을 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이하에서는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하여 일반감사위원회와 특례감사위원회로 구분하고 개정법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 일반감사위원회와 특례(엄격)감사위원회

상법상 감사위원회에는 일반감사위원회와 특례(엄격)감사위원회의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일반감사위원회

일반감사위원회란 상법 제415조의2에 의거 설치되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상법 제415조의2는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감사위원회를 ‘일반감사위원회’라 칭한다.

일반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일반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의 위원회 중 하나이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일반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들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들만으로 구성할 수는 있다.

일반감사위원들은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사로 선임된다. 이사로 선임될 시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된다. 그리고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 주주총회가 이들을 이사로 선임할 때에 다른 이사들을 선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주주도 의결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이를 다시 결의할 수 없다(상법 제542조의2 제6항).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2) 특례(엄격)감사위원회

특례감사위원회란 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에 의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설치가 강제되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는 상장회사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이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감사위원회를 '특례감사위원회'라 칭한다.

다만 다음의 상장회사는 특례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가능하다. 즉 ①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②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장회사, ③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④신규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에 한한다) 등은 제외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특례감사위원회는 일반 감사위원회의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 몇 가지의 요건을 더 갖추어야 하고, 일반 감사위원회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특례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들이다.

가. 자격요건

① 감사위원 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 특례감사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 1명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회계 또는 재무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상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의 입법취지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계 및 재무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특정부서에서 근무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재무 또는 회계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학위가 재무 및 회계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요건을 판단해야 한다(재경부 유권해석 ; 2005. 12. 22). 아울러 해당 회사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될 자가 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2호).

③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즉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소극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 등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나. 선임절차

특례감사위원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설치되어야 한다.

① 특례감사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사외이사로 선임될 때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5항).

② 특례감사위원회 위원들도 일반감사위원회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다. 이사로 선임될 시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되는 것도 일반감사위원들과 다르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3명 이상을 다시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감사위원회 위원들과 다르다(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일반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데 비하여(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특례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다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및 제542조의12 제1항, 제2항). 이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이든, 사외이사인 감사위

원이든 마찬가지이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절차의 비교

일반감사위원회	① 주주총회에서 이사·사외이사로 선임
	② 선임된 이사·사외이사 중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
특례감사위원회	① 주주총회에서 이사·사외이사로 선임
	② 선임된 이사·사외이사 중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든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 비율은 정관으로 낮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그런데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감사·상장회사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감사	3% 이상 소유한 모든 주주는 3%까지 의결권 행사	
상장회사 감사	일반주주 : 3%까지 행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 합산하여 3%까지 행사	
특례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 합산하여 3%까지 행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 이상 소유한 모든 주주는 3%까지 의결권 행사

③ 이렇게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와 사외이사인 감사

위원의 선임 시 사이에는 의결권행사의 제한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주총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 의안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의안을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각각 구분하여 별개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 임기 및 보수

감사위원은 그 신분이 이사이므로 그 임기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관에 감사위원의 임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선임기관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선임기관에서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3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음) 내에서 감사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위원으로서의 임기보다 이사로서의 임기가 단기인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해 종임된다.

라. 감사위원의 총원 및 방법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4항).

특례감사위원회에서 이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와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로 구분

하여 설명한다.

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결원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면 된다(상법 제542조의11 제4항).

②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 3명으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충원하는 방법으로 충원하면 된다.

마.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에 대한 제재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정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이유로 사임한 경우에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재선임하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3항 제5호).

또한 회사가 상법에 규정된 사외이사 수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거래소는 해당 회사의 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유가증권상장규정 제75조 제1항 제7호), 사외이사 수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의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주권의 상장을 폐지한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80조 10호).

4. 2011 개정상법의 내용

(1) 개정상법의 내용

2011. 4. 14. 개정 상법에서는 그동안 해석상 논란을 가져왔던 기존의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의 제1항에서 “이 법”을 “이 절”로 문구를 수정하였다. 즉 아래의 관련 법조문에서 “이 법”이 “이 절”로 금번에 개정된 것이다.

제542조의10 (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14) [시행일 2012.4.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개정 2011. 4. 14) [시행일 2012.4.15]

1. 제542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 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위의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이 절(개정 전 ‘이 법’)은 2009. 1. 30에 신설된 규정으로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로써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즉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에 따른 특례감사위원회를 말하고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일반감사위원회로 상근감사에 갈음할 수 없게 되었다.

(2) 문제점

상법 개정 전에 이미 일반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가 개정상법 전부터 종전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반감사위원회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개정상법의 시행일(2012. 4. 15)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종전 법률에 따라 일반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개정상법 시행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새로이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개정상법은 이에 관하여 명문을 두거나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상장회사는 법 개정 후에도 혼란이 예상되므로 개정상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2012. 3. 말에 종료되는 12월 결산 상장회사 중 일반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대하여는 유효하다는 경과조치를 두어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Ⅵ. 사외이사의 보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평균보수는 24,037천원이며 이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평균보수는 29,579천원이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평균보수는 18,448천원으로 나타났다(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장회사 분석내용 참고).

1. 보수결정의 원칙

(1) 보수결정의 절차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전원의 보수 총액을 정해주고 이사회에서 이사 간에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사회에서 보수를 배분할 때 실질적인 결정이 대표이사나 지배주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가 있으나, 보수의 배분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보수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진지한 검토를 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무상이 원칙이나(민법 제686조 제1항) 이사의 업무집행을 통해 영리를 실현하는 주식회사에서는 이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며, 사외이사의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지녀야 하고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외이사의 보수와 상근이사의 보수는 별도의 의안으로 주주총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보수의 공정성

일반적으로 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외형적으로는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이 업무의 전부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외이사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종업원이나 주주들에게 과다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사외이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의사결정은 중요하기 그지없고 또 사외이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에 관해 책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출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수지급의 공정성에 관해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사외이사의 보수가 어느 정도일 경우에 직무와 관련하여 적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은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결국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상근하는 임·직원의 보수가 상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상근이사들의 보수와 동등하다든지 이에 근접해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회사의 규모나 업종 등을 감안하여 업계에서의 통례의 수준을 지키는 것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상법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을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 542조의4 제3항). 이는 사외이사의 보수도 주주나 투자자의 감시하에 둬으로써 보수의 공정을 기하려는 취지이다.

2. 보수성 경비

회사가 사외이사에게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외에 명목상의 필요경비로 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회사의 부담으로 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예컨대 직무와 무관한 차량 제공, 회사 인적·물적 시설의 사적인 이용), 이는 실질적으로 보수이다. 따라서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388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구성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혜택은 회사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부여받은 사외이사도 소득세(근로소득)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내용에 따라서는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지만(예컨대 회사와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사외이사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실비변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퇴직금의 지급제한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평균임금으로서(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축적된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인데, 이는 복지후생적인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근로자로서의 신분과 임금의 수령을 전제로 한다. 근로자란 고용관계에서의 피용자를 의미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피용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제도는 종업원의 신분을 전제로 한 것이고, 회사와 위임의 관계에 있는 이사, 감사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으로서는 적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상근하는 임원의 경우 임원의 신분이 생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실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에 주기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생계를 그 회사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므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기에 부적합하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주식매수를 동기로 하여 회사의 영업실적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스스로 창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상무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임하거나 핵심적인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써 적극적으로 영업에 관련된 이익을 창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의사결정이 기업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그리고 상근이사와 비교하여 과다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다.

5. 당해 회사의 주식보유

상법 제387조는 자격주를 관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정관으로 이사가 가져야 할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는 제도이다.

이는 정관에 이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할 주식 수를 규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간접적으로는 이사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경영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를 정관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원격적인 입장에 있어 자칫 회사의 이해에서 심리적으로 소원해 질 수 있다. 사외이사가 당해 회사 주식을 보유한다면 회사의 경영에 관해 이해의 일치를 실현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권장할 만하다고 본다.

다만 사외이사의 자사주 취득은 자신의 경제적인 부담 하에서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에 부담을 주거나 특혜적인 절차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외이사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 주식을

취득·매각하는 것은 내부자거래로서 법이 금지하고 있으며, 6월 내의 단기간의 매매를 할 경우에는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등 당해 회사 주식의 보유에 관해 법적 규제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Ⅶ. 사외이사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등

1. 이사 및 사외이사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8다94097 판결

대표이사가 그 업무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직부상의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8. 09. 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하

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대규모 회사에서 여러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분야를 전담한다고 하여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사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이사가 법령을 위한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서울행정법원 2007. 6. 12 선고 2006구합48066 판결

전임 검사장이 영리사기업체에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이 사건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요청은 원고의 해임이라는 취업해제조치를 위한 선행적 절차이고 단순한 요청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나 신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대전지방법원 2006. 3. 14 선고 2006카합242 결정 【아이칸파트너스 엘피 외 3인 대 KT&G 사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감사위원과 일반사외이사 분리선출방식의 위법성 여부

전자법정 및 구술변론주의를 온전히 시현한 모델케이스로서의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혼용되고 있는 분리 선출방식과 일괄 선출방식이 모두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한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5. 선고 2010라1065 【이사직무집행 정지가처분】

판시사항

- [1]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3]주주총회 소집통지 과정에서 선임할 이사의 인원수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다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피신청인들이 다시 이사로 선임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가치분으로써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예컨대, 5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신의 보유 지분에 의하여 이사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2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달리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2]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선임할 이사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회사가 이사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선임하였을 경우에 등기 방법에 관해 규정한 것이지, 위 규정으로 말미암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있어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3]4명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이사 4인 선임의 건'이 아닌 '임원선임의 건'으로만 표기하였으므로 위 주주총회에는 집중투표를 위한 이사 인원수 기재에 관한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존재하지만, 다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피신청인들이 다시 이사로 선임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가처분으로써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06. 3. 14. 선고 2006카합242 【주주총회결의 금지가처분】

판시사항

- [1]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또는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종래 실무상 운용되고 있는 분리선출 방식과 일괄선출 방식에 대하여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위 두 가지 방식이 주주총회결의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고 그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는 이상 이사회에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 [1]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등의 입법 경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상 주주 제안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소수주주들로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또는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종래 실무상 운용되고 있는 분리선출 방식(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다른 사외이사들과 분리하여 주주총회에서 뽑는 방식)과 일괄선출 방식(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후보 전체를 대상으로 이사선임결의를 하고 나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위원을 뽑는 방식)에 대하여 ① 분리선출 방식에 의할 경우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청구권이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집중투표제는 정관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상법 제382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 제1항), 소수주주들로서는 사외이사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일괄선출 방식을 택하도록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리선출 방식이 소수주주의 의결권 또는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일괄선출 방식에 의할 경우 제1단계의 사외이사 선임결의에서 대주주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대부분 사외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제2단계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결의에서 상법상의 대주주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이상 이를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위 두 가지 방식이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고 그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

한 결정권한은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는 이상 이사회에 있다고 한 사례

2.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사례

(1) 사외이사 선임관련 자본시장법과 상법의 불일치 여부

■ 질의내용 ■

- 자본시장법 제25조 제1항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1/2 이상 선임하도록 하난 한편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선임하는 규정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면서 상장법인인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 구성요건은 어느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해석내용 ◆

- 자본시장법 제25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일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며, 상법 제542조의8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상장법인에 대하여 비상장법인보다 강화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임.

◆ 관련법규 ◆

- 자본시장법 제25조 제1항 및 상법 제542의8 제1항

(2)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계전문가 해당 여부

■ 질의내용 ■

- 자본시장법 제26조 제2항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을 요구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 해석내용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열거한 기관에서 소속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재무 또는 회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 따라서 국제청에서 5년 이상 세무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더라도 법인세 등 기업의 회계 또는 재무관련 세무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만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볼 수 있음.
 - ※ 다만 상법 시행령에 관한 해석은 법무부 소관사항이므로 상장법인에 대한 적용여부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

◆ 관련법규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3) 자본시장법상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임관련

■ 질의내용 ■

- 자본시장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 감사위원과 관련하여
 - 총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의 3분의 2를 제외하고 나머지 감사위원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이 동법 시행 이전 선임되어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현재의 상임감사에 대한 경과규정은?

◆ 해석내용 ◆

- 자본시장법 제26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 총수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나머지 1/3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의사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상근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기존의 상근감사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상근감사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26조 제3항)
 -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상근감사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실제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규 ◆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조

(4) 자본시장법상 감사위원 자격

■ 질의내용 ■

- ① 감사위원이 이사회에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 ② 상근감사위원은 자본시장법상 감사위원의 부적격자가 아닌지
- ③ 사외이사를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할 때 사외이사의 추가선임 여부
- ④ 사외이사를 비집행업무이사로 해석할 수 있는지
- ⑤ 상근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선임이 불가한 것은 아닌지
- ⑥ 현행 법률에서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 해석내용 ◆

- ① 감사위원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법의 해석사항이므로 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②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자본시장법 제26조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26조 제3항 각 호의의 부분 단서)
- ③ 사외이사인 자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구성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 ④ 자본시장법상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시장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하므로 귀하께서 예시하신 비집행업무 이사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사외이사로 볼 수 없

음.

- ⑤~⑥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상근 임원의 지위를 갖더라도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음.

◆ 관련법규 ◆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조

3. 사외이사 등 관련 Q&A

(1) 감사위원회 설치 및 사외이사 선임 의무 관련

■ 질의요지 ■

- 당사는 올해 최초로 대규모 상장회사*에 해당되어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및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부여되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 응 답 ◆

- 상장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을 실시한 결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결산을 확정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3인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종래 증권거래법시행령 제54의5 제6항에서는 최초로 대규모 상장회사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였음
- 상법 제542의8은 그와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필요

◆ 관련법규 ◆

- 상법 제542의8 제3항

(2) 사외이사 선임관련 자본시장법과 상법의 불일치 관련

■ 질의요지 ■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금융투자업자임. 그런데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과 상법에서 그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 응 답 ◆

- 자본시장법 제25조 제1항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사외이사를 3인이상, 이사 총수의 1/2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 선임시 어느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가 본 질의의 내용임

- 자본시장법 제25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일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며, 상법 제542조의8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상장법인에 대하여 비상장법인보다 강화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임
- 따라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상장법인인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 요건과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금융위 유권해석: 2009. 12. 28.)

◆ 관련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상법 제542의8 제1항

(3) 사외이사 법정인원수 충족여부관련

■ 질의요지 ■

- 사외이사를 선임한 주권상장회사 등이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법정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 응 답 ◆

-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예상치 못한 췌위시)
 -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있는 상장회사는 상법상의 사외이사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법정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충원하도록 하고 있음

-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의 사유(예상한 결위기)
 - 사외이사의 퇴임사유가 임기만료일 경우 상법 제542의8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 즉,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으로 법정 사외이사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관련법규 ◆

- 상법 제542의8 제3항

(4) 사외이사선임·해임·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관련

■ 질의요지 ■

- 당사는 상장법인으로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 동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사외이사 중도퇴임 및 선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응 답 ◆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제3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 본 공시와 관련, 공시 서식상의 '기재상의 주의'에서 과거에는 '임기만료 전에 동일 임원으로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라고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동 항목이 삭제되었음

- 따라서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동일 임원으로 재선임되는 경우에도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공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17 제3항

(5)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요건 관련

■ 질의요지 ■

- 당사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상법에 따라 상근감사를 두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 상법 제415조의2가 정하는 요건만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응 답 ◆

-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법 제415조의2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42조의11에서 정하는 요건도 갖춘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에만 상근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참고로 '11년 개정상법은 종래의 논란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명문으로 입법하였음

◆ 관련법규 ◆

- 상법 제542의10

(6)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1)

■ 질의요지 ■

-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응 답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상법 §542의8 제2항 제7호 및 동시행령 제6의7 제5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회사와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회계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됨

◆ 관련법규 ◆

- 상법 제542의8 제2항, 동법시행령 제6의7 제5항

(7)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2)

■ 질의요지 ■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이 상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어떤 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 응 답 ◆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의 입법취지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계 및 재무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정부·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특정부서에 근무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재무 또는 회계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학위가 재무 및 회계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요건을 판단해야 함(구 재경부 유권해석: 2005. 12. 22.)
- 아울러 해당회사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될 자가 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 충분히 확인해야 함

◆ 관련법규 ◆

- 상법 제542의11 제2항

(8)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시 의결권 제한관련

■ 질의요지 ■

-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은 어떻게 제한되는지?

◆ 응 답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시 개별주주의 의결권 제한과는 별도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 수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됨
 - 또한 감사 선임시에는 어떤 주주라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상법 제 409조 제2항)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상법상 감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모든 주주별로(최대주주, 일반주주 구분 없음)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

◆ 관련법규 ◆

- 상법 제542의12

<참고문헌>

-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7판), 박영사, 2009.
-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3판), 박영사, 2010.
-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9.
- 권중호, 「감사와 감사위원회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회사 실무총서 II-2), 2004. 9.
- 최준선, 「효율적인 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입법과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협 연구보고서 2008-1), 2008. 11.
- 김상규·윤선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0. 12.
- 이형규·이상복,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2.5.
- 임중호, 「감사·감사위원회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제고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협 연구보고서 2007-1), 2007. 11.
- 정광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사외이사의 역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2. 11.
- 정찬형,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협 연구보고서 2010-2), 2010. 10.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2007. 12.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2007. 12.
- _____,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사외이사의 역할」, 상장협자료집 2002-7, 2002. 11.
- _____, 「사외이사직무수행 표준모델과 운영실제」, 2006. 9.

- _____, 「상장회사 표준사외이사 행동강령」, 2005. 11.
- _____,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해설」, 2001. 7.
- _____, 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자를 위한 특별세미나 교재, 2010. 10.
- _____, 「사외이사인력뱅크 등록자 명부」, 2010. 1.
- 강희갑,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경영감독기능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5권 1호(통권 4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회사편)에 관한 공청회」, 2009. 11.
- 권중호,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 「상장협」 제44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1.9.
- 김교창, “상장회사의 특례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논점”, 「인권과 정의」 vol. 396, 대한변호사협회, 2009. 8.
- 김병연,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한 연구”, 「비교사법」 제15권 1호(통권4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3.
- 노일석,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미국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
- 박강익·박수영, “사외이사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28호), 한국기업법학회, 2007.
- 삼성경제연구소,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방안”, 「CEO Information」 391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3. 12.
- 양동석,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업법연구」 제8집, 한국기업법학회, 2001.
- 윤계섭, “사외이사제도에 관한연구 - 사외이사 평가를 중심으로”,

- 「기업지배구조 리뷰」 vol.56,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1. 5~6.
- 이균성,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지위”, 「상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 이기수,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61~63면.”
- 이맏기, “사외이사 관련 법규 및 운영현황-주요국의 사외이사제도와 특징에 대한 비교 포함”,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사외이사의 역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2.
- 전규향,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2.
- 전삼현,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재고찰”, 「인권과 정의」 제268호, 대한변호사협회, 1998.
- 정준우, “이사회 의 경영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운영과 그 문제점-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26호), 한국기업법학회, 2006.
- 정쾌영,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업법연구」 제19권 제2호(통권 제21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 최문희, “이사의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입법동향”, 「CGS Review」 vol.27,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2006.
- 최완진,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재검토”, 「기업법연구」 제5집, 한국기업법학회, 2000.
- 최준선,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실태분석”, 「기업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6.
- 표성수,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 「인권과 정의」 통권 394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 6.

홍복기, "사외이사제도의 정착과 그 활성화", 「상장협」 1998년 춘
계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8.

_____, "감사의 독립성-사외이사와 사외감사제도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8권, 한국경영법률협회, 1998.

《부록》

1. 사외이사 관련법규 및 규정(상법, 자본시장법 등 발췌)

□ 상법 □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1.30]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4.14>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 2012.4.15] 제542조의8

□ 상법시행령 □

제13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3.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

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
 - ② 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 ③ 법 제542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관련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보험업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상호저축은행법」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예금자보호법」
 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한국산업은행법」
 12. 「중소기업은행법」

13. 「한국수출입은행법」
14. 「신용협동조합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7. 「새마을금고법」
1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외국환거래법」
21. 「외국인투자촉진법」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5. 「담보부사채신탁법」
26. 「금융지주회사법」
2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④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6촌 이내의 혈족
 - 다. 4촌 이내의 인척
 -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이사·감사
-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감사
-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감사
-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감사
-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3>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감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감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감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

- 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해당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 사. 해당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 ⑥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는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11.23, 2010.6.28,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7.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
 -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8.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
- 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 나.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바.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 [본조신설 2009.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5조(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 구성) ①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외이사(社外理事)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 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

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제29조제6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 해당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5. 해당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 해당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7.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근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8.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해당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⑥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

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은행법 □

제22조(이사회회의 구성) ① 삭제 <1999.2.5>

② 은행은 이사회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이 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은행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 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0.5.17>

④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0.5.17>

⑤ 새로 설립되는 은행이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⑥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2호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신설 2010.5.17>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다)
 3. 은행,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상임 임직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
 - 가.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및 자은행(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 나.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5.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임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
 7. 해당 은행의 상임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임 임직원
 8.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렵거나 그 은행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⑧ 삭제 <2002.4.27>
- ⑨ 삭제 <1999.2.5>
- ⑩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사회와 운영과 구성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제목개정 2010.5.17]

□ 보험업법 □

제15조(사외이사의 선임 등) ① 보험회사(자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이사회에 3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최대주주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5. 그 보험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6.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7. 그 보험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8.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9.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렵거나 그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보험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사회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상호저축은행법 □

제10조의3(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외이사(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8. 그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10. 그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에 충실하기 어렵거나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⑤ 상호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해당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2]

□ 금융지주회사법 □

제10조의3(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외이사(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8. 그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

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10. 그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에 충실하기 어렵거나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상호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해당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2]

2.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

2000.12. 1. 제정

2007.12. 13 개정

제1장 사외이사의 역할과 법적 지위

1. 사외이사의 역할
2.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제2장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3. 사외이사의 권한과 의무
4.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외이사의 책무
5.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장 사외이사의 선임 및 활동

6. 사외이사의 선임
7. 사외이사의 활동
8. 사외이사의 연수

제4장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9.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규준 제정의 목적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는 기업에 의해 창출되므로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요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민간부문의 최대의 과제이었으며, 이를 통한 기업가치의 극대화가 기업단위에서의 모든 참여자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계기가 된다. 기업의 경쟁력강화는 합리적이고 견실한 기업지배구조를 선결조건으로 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동일한 과제로 인식하여 왔던 바이고 그 긴요한 실천수단의 하나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는 최선의 방법과 형태는 해당 회사의 형편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으며, 그 운영의 효율성은 자본시장에 의해 평가되므로 기업의 실정에 따른 운영의 묘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에 관해서는 획일적인 법적 규율보다는 회사의 자치적인 규율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회사의 자율에 의한다 하더라도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규범적 기준은 존재하며, 그 동안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에 비추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규범적 기준의 설정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기업의 환경에서 사외이사는 기업과 사회로부터 고도의 신뢰와 함께 그 역할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범규범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전문지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단지 기업경영의 소극적 감시자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회사의 업무에 적극 관여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주주와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기준에 맞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동규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사외이사제도의 순기능은 사외이사들의 능동적인 자세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회사의 기대와 지원, 협조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최고경영진과 대주주의 긍정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개정 2007.12.13)

제1장 사외이사의 역할과 법적 지위

1. 사외이사의 역할

1. 1. (최고 경영의사 결정에의 참여)

이사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방침과 장기적인 경영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서 업무집행을 결정하며 이사와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한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발휘하고 이사에 개별적으로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2. (회사의 이익 보호)

사외이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개정 2007.12.13)

1. 3.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이사회 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는 이사와 경영진 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의 감독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기여하여야 하고, 특히 상근이사 의 업무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한다.(개정 2007.12.13)

1. 4.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

사외이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 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07.12.13)

2. 사외이사의 법적지위

2. 1. (회사의 수임인)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는 회사 의 수임인(受任人)이고, 자신을 추천하거나 선임에 기여한 주주 의 대리인이나 수임인이 아니다.(개정 2007.12.13)

2. 2. (사외이사와 상근이사)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나, 이사로서의 법적인 권한,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상무에 종사하는 상근이사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2. 3.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

사외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모든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3)

2. 4.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의 독자성)

사외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사의 업무집행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개정 2007.12.13)

제2장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3. 사외이사의 권한과 의무

3. 1.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이사의 직무는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채권자·종업원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이며, 사외이사 역시 이를 기본적인 직무로 한다.(개정 2007.12.13)

3. 2. (사외이사의 권한)

1) 사외이사의 기본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사회에의 출석권과 의결권
-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권 및 이사회에의 감독권 행사에 참여하는 권한(개정 2007.12.13)

2) 위의 1)의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① 이사회에의 소집권

- ② 대표이사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
 - ③ 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 ④ 회사의 장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
 - ⑤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
3. 3. (사외이사의 일반적 의무)
- 1) 사외이사의 권한은 동시에 사외이사의 의무이므로 권한을 행사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7.12.13)
 - 2)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해 주의의무를 갖는다.(개정 2007.12.13)
 - 3)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에는 의안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지득하고 그 의안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의사결정에 임해야 한다.(신설 2007.12.13)
 - 4) 사외이사는 주주, 종업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회사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원(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되, 항상 주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여 회사업무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3)
3. 4. (자기거래의 제한)
- 1)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거래(자기거래(自己去來))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07.12.13)
 - 2) 사외이사가 불가피하게 자기거래를 하더라도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이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 됨을 유념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3)
3. 5. (경업(競業)의 금지)
- 사외이사가 이사회회의 승인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에 취임할 수 없으며, 이사회에 승인을 얻더라도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개정 2007.12.13)

3. 6. (신주등의 인수)

사외이사가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주나 실권주 또는 단주를 인수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보증을 이용하는 등 회사의 부담으로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07.12.13)

3. 7. (이해중개의 금지)

사외이사는 자신의 관련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거래를 알선하거나 기타 편향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3. 8. (이해개입의 금지)

사외이사는 회사에 인사청탁을 하거나 기타 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회사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

3. 9. (비밀유지의무)

사외이사는 회사에 관해 지득한 기업비밀 기타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전달하여서는 안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도 안된다.(개정 2007.12.13)

4.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외이사의 책무

4. 1.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의무)

이사회에 출석은 사외이사의 의무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결석하는 것은 임무해태이고, 결석으로 인해 부당한 결의를 막지 못했다면 이로 인해 생긴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07.12.13)

4. 2. (의결권 위임의 금지)

사외이사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하지 못한다.(개정 2007.12.13)

4. 3. (의사결정에 임하는 자세)

사외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는 데 있어 의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의 이익에 미칠 영향에 관해 신중한 판단을 거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4. 4. (정보 확보의 필요)

사외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사정에 밝지 않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고, 상근이사와 동등한 판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안의 내용과 관련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결의에 임해야 한다.(개정 2007.12.13)

4. 5. (이사회에서의 자세)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업무 집행이므로 사외이사는 표결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의안에 대한 각 이사의 입장표명은 이사회결의가 성립하는 근거가 되고, 추후 이사의 책임의 근거가 됨을 유념하여 사외이사는 자신의 찬성 혹은 불찬성의 의견표명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3)

(주석)

불찬성은 반대뿐 아니라 기권, 의견 불표시 등 찬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사 표시를 말하는 것임.(신설 2007.12.13)

4. 6. (반대에 대한 책임)

사외이사는 부당한 반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3)

5.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5. 1. (책임의 일반원칙)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이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점은 사외이사도 같다.

(주석)

사외이사는 상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제약이 있고, 업무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에도 제약이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에 있어서는 상근이사에 비해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또 이같은 책임제한을 입법화한 나라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사외이사의 책임을 상근이사의 책임과 구별하여 경감할 근거가 없으므로 상근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업무수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신설 2007.12.13)

5. 2. (임무해태)

임무해태(任務懈怠)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을 뜻하며, 이는 회사의 업무를 비효율적·비영리적으로 집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5. 3. (찬성이사의 연대책임)

이사의 업무집행이 이사회 결의에 의하고 그 결의가 부주의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4. (반대이사의 책임)

회사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다수라서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따라서 권리행사 등이 지연 또는 방해된 경우 반대한 이사회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개정 2007.12.13)

5. 5. (입증책임)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는 이사회 의사록으로 추정한다.(개정 2007.12.13)

5. 6.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결정 또는 집행한 때에는 그로 인해 생긴 회사의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3)

제3장 사외이사의 선임 및 활동

6. 사외이사의 선임

6. 1.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선임의 공정성)

사외이사가 회사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선임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경영자·주주·사외이사가 공히 인식하여야 한다.

6. 2. (대주주의 영향력 자제)

대주주는 관련법상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가족이나 친지, 관련회사의 임·직원 기타 측근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인사는 스스로 사외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개정 2007.12.13)

6. 3. (사외이사 후보추천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제거하고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과 업무의 신뢰성이 검증된 자를 사외이사의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설 2007.12.13)

(주석)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각 후보의 자질과 약력에 관한 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사외이사 인력풀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외이사후보를 추천받거나 인력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신설 2007.12.13)

6.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 선임의 공정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명칭을 여하히 하든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서 사외이사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설 2007.12.13)

6. 5. (사외이사의 적격성)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회사의 업무에 대한 적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회사의 업무에 대해 숙지하고 있고 판단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6. 6. (사외이사의 겸임 자제)

사외이사는 업무의 충실과 기업비밀의 유지를 위해 복수의 회사에 사외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할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겸임을 삼가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회사의 사외이사 겸임을 자제하여야 하고,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07.12.13)

(주석)

사외이사는 당해 회사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하지 못한다.(신설 2007.12.13)

7. 사외이사의 활동

7. 1. (업무 숙지의 중요성)

회사의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도 있고, 설령 업무에 친숙한 자라 하더라도 상근하지 않는 사외이사의 특성상 회사 업무에 정통할 수는 없다. 그로 인하여 사외이사가 왜곡된 판단이나 부적절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을 야기하거나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상근이사와 등가적(等價的)인 지위를 가지므로 회사의 영업 및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사외이사에게도 사내이사에 못지 않은 업무 숙지와 숙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사외이사제도가 올

바르게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외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신설 2007.12.13)

7. 2. (사외이사 지원 조직 설치)

회사내에 사외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할 조직을 설치하거나 직원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설 2007.12.13)

7. 3.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3)

7. 4.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

1)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최소 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와 관련 참고자료를 최소 1주일 이전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설 2007.12.13)

2)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경영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3)

7. 5. (사외이사만의 회의)

대규모 공개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경영 감독·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설 2007.12.13)

(주식)

대규모 공개회사란 증권거래법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회사를 지칭하지만, 본 규준에서는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매출액, 시가총액 등에서 그 규모나 비중이 큰 회사들을 의미한다('이하 같다').(신설 2007.12.13)

7. 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대규모 공개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회 내부에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한다.(신설 2007.12.13)

7. 7.(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의 공시)

위원회 개최를 포함하여 이사회 개최 횟수 및 주요 안건, 사외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상세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전문연수이수등 기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설 2007.12.13)

7. 8. (이사회 권한의 축소 및 포괄위임의 금지)

이사회 운영규정 기타 이사회 업무결정방법을 다루는 규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권한을 축소하거나, 대표이사 또는 상근이사에게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12.13)

7. 9. (감사인의 선정)

사외이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외부감사인의 제청에 관여할 경우에는 감사인의 과거의 업적과 신뢰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7. 10. (전문위원의 참조)

이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 자산, 주식 등의 평가 또는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그 전문성이 이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얻도록 하여야 하고 그 자문을 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11. (회의자료의 보관)

이사회 회의자료는 추후 이사의 책임의 유무에 관한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그 자료를 최소 2년간은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은 혹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책임소재의 추정자료가 되므로 사외이사는 그 사본을 요구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7. 12. (회사의 현황 파악)

사외이사는 회사의 재산상태, 영업의 추이 등 회사의 현황을 항상

과약하여야 하며, 이 점에 관해 회사에 정보를 요구하고 회사는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8. 사외이사의 연수

8. 1.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연수)

회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경영현황과 경영전략, 영업현황, 자체의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 등 회사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내부연수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의사결정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3)

8. 2.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연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회사는 사외이사가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외이사의 업무와 관련된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3)

제4장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9.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9. 1. (사외이사의 평가)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설 2007.12.13)

9. 2. (보수결정의 원칙)

임·직원의 보수란 주어진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인 만큼,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지녀야 하며,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적정하여야 한다.

9. 3. (보수성 경비)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보수가 아닌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함에 있어 실비변상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4.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결정)

사외이사의 보수와 상근이사의 보수는 별도의 의안으로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설 2007.12.13)

9. 5. (퇴직금의 지급 제한)

사외이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9. 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식매수선택권(株式買受選擇權)은 회사의 수익을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데는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9. 7. (당해 회사 주식의 보유)

사외이사가 자력에 의해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당해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내부자거래 기타 법이 금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상장회사 표준사외이사 행동강령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 2005. 11. 28.

상장회사 표준사외이사행동강령의 제정 취지

1. 제정 배경 및 목적

국내외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주주와 사회의 새로운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기능의 활성화를 포함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그 실천 방안의 하나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음.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외이사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음. 그런데, 이사회와 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와 주주 전체의 이익보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의 면에서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하여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들이 회사경영에 관한 최고의 사 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외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본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장회사 사외이사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본원칙의 모범으로 「상장회사 표준사외이사행동강령」(이하 “표준행동강령”이라 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표준행동강령은 사외이사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표준행동강령의

내용은 모든 이사들에게 타당하므로 상근이사들도 같은 내용의 행동강령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임.

2. 표준행동강령의 성격

표준행동강령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들이 스스로 사외이사의 행동강령을 제정하는데 참고·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임.

* 본회에서는 상장회사들의 적법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동안 상장회사 표준윤리강령을 비롯하여 상장회사 표준정관,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 상장회사 표준감사위원회규정 등 각종 표준 규정과 예시를 제정, 상장회사가 참고, 활용토록 권장하여 왔음.

표준행동강령은 사외이사의 행동강령의 표준적인 예를 제시한 것으로 각 상장회사의 내부사정 등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상장회사의 고유한 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히 수정하여 채택할 수 있음. 사외이사들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예: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행동강령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임.

표준행동강령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사외이사의 구체적인 법적인 의무와 책임은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3. 표준행동강령의 내용과 구성

표준행동강령은 행동강령의 목적, 즉 사외이사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본원칙을 정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사외이사의 역할과 직무수행에 관한 7개의 기본원칙과 사외이사의 기본윤리에 관한 4개의 기본원칙 등 총 11항목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음.

상장회사 표준사외이사행동강령

1. 목 적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본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이 행동강령을 채택한다.

2. 사외이사의 역할과 직무

-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한다.
- 사외이사는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회사의 발전을 회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 사외이사는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 전체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
- 사외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함으로써, 회사가 주주뿐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사외이사는 회사가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 사외이사는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독립적인 지위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3. 사외이사의 기본윤리

- 사외이사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특히 회사의 사업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 사외이사는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외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사외이사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증권투자 또는 기타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 사외이사는 회사가 제정한 (임직원)윤리강령상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4.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2010. 1. 2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준은 은행등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은행등 경영의 적법성,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라 함은 은행등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말한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함은 은행법 제22조제3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말한다.
3. “이사회등”이라 함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위원회’를 말한다.
4.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을 말한다.
5.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6. “은행등”이라 함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7. “주식”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8. “자회사”라 함은 은행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등”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10. “모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배하는 회사를 말

한다.

11.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12.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준은 은행등에 적용한다.

제4조(법령과의 관계) 이 규준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및 상법 등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이 규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 은행등은 사외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2장 사외이사의 선임

제6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은행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대주주와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다)
4. 해당 은행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 ③ 은행등은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7조(사외이사 선임절차) 은행등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제8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9조(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① 위원회는 은행등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제21조에 따른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이 규준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은행등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50(다만, 관련법령에서 더 낮은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상법 제542조의6제8항에 따라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가 회사에 추천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절차 개요
2.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후보 인선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인선자문단 명단 및 약력
4.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5. 사외이사 후보와 해당 은행등(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6. 관계법규 및 제6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7.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등

제3장 사외이사의 임기

제11조(사외이사의 임기) 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기의 만료시점을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함에 따라 임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해당 은행등의 계열회사

가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을 때 편입된 자회사등의 사외이사는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은행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자회사, 그 은행의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
2.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

제12조(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용) 은행등은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를 말한다)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사외이사의 역할 및 활동 등

제13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은행등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사외이사의 권한)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사외이사의 책임)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이사회등이 은행등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 참여 등에 할애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해당 은행등(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해당 은행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은행등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은행등은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기타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 은행등(계열회사 및 해당 은행등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은행등이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이사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해당 은행등(제2조제6호의 은행등을 말한다)의 사외

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비영리법인등이 해당 은행등으로부터
기부금등을 받는 경우 이사회에 미리 보고할 것
3.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
· 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 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
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제16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
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
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④ 은행등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은행등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실을 이사회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내위원회 연임 제한) ① 사외이사는 평가보상위원회 등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평가보상위원
회 등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
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행등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외이사 활동 내역 공시) 은행등은 이사회등이 소집된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제6조 해당 여부 등을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공시를 합리적 기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5장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19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 은행등은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 등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③ 은행등은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일까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사항 및 직전 결산기 동안 제2항에 따른 평가실시 여부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외이사의 보수) ① 은행등은 사외이사에게 제4장에 따른 책임과 활동의 정도에 따른 보수(수당을 포함한다)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보수를 해당 은행등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은행등은 사외이사의 보수를 별표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사외이사 활동의 지원

제21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설치) ① 은행등은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3.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4.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제22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은행등은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 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은행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경영정보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은행등은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1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은행등은 사외이사가 이사회등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 은행등은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은행등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은행등은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공시 등

제25조(이사회등 및 사외이사 운영에 관한 공시) 은행등은 이 규준에 따른 이사회등 및 사외이사 운영 현황을 별표 4에 따라 정기주주

총회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한다.

제26조(공시방법) ① 이 규준에 따른 공시는 은행등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② 이 규준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규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이 규준 및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27조(예외공시) 은행등이 관련법령상의 특례적용, 주주총회 의결 등 정당한 사유로 이 규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과 그 이유(법령상의 특례적용 사유, 주주총회 의결 사유 등을 말한다)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사항) 은행등은 이 규준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기 위해 해당 은행등의 정관 및 내규를 2010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제6조 및 제11조는 이 규준 시행 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적용하며, 제9조제4항은 이 규준에 의해 평가받은 사외이사의 연임시에만 적용한다.

② 이 규준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11조제2항에 따른 총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규준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11조제3항, 제4항을 적용한다.

③ 은행등은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이 규준 시행 후 최초 주주총회부터 제12조에 따른 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와 준수계획을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시행계획을 수정할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다.

- ④ 은행등은 이 규준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 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이 규준 시행당시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도 제15조제6항제1 호와 관련해서는 이 규준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 에서 최초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제10조 관련)

I.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II.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 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총 00 명(사외이사 00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여부
000 (위원장)		
000		

III. 사외이사 후보 관련

1. 000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나. 후보제안자 : 000	
1)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3) 추천 이유	
다.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의 관계	
2) 대주주와의 관계	

3) 임원과의 관계		
라.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나)		
다)		
2) 적극적 요건		
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2. 000

※이하 양식은 위 Ⅲ. 1. 과 동일

비고 :

1. 'Ⅰ.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을 위한 내부절차를 상세히 기재
2. 'Ⅲ. 사외이사 후보 관련'은 각 사외이사 후보 별로 작성하며, '2. 후보 제안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예비후보를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3. 'Ⅲ. 1. 나. 2) 후보자와의 관계'와 'Ⅲ. 1. 다. 3). 임원과의 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우관계, 동일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각 기재
4. 'Ⅲ. 1. 라. 1) 소극적 요건'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각 항목별 해당 여부 및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거래비중을 기재(예컨대 거래실적 합계액의 비중이 10% 미만이어서 소극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실적 합계액의 비중이 9%인 경우 9%를 표시하고 구체적 금액이 표기 가능할 경우 그 금액을 병기)하고, 'Ⅲ. 1. 라. 2) 적극적 요건'은 제6조제3항

* 개최·참여란에는 횟수를 기재(해당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하고, 활동시간에는 간담회 실적 등을 포함하여 기재

III. 사외이사 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사외이사 성명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2. 누적 교육 시간(총 00시간)												

* '2. 누적 교육 시간'은 해당 은행 등의 사외이사로 취임 후 참석한 교육·연수시간을 합산하여 기재

IV.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나.		
다.		
2. 적극적 요건		

* 별표 1. 의 비고 4. 기재방식 참고

V.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등에 기부금등 지원내역

사외이사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기부한 은행등 ²⁾	지원 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¹⁾		보고내용 ³⁾	과거 5년간 ⁴⁾
OOO		OOO ()	OOOO ()		
		OOO ()	OOOO ()		
OOO		OOO ()	OOOO ()		

- * 1) 해당 법인등의 수탁자 또는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를 기입하고, 괄호안에 사외이사와 관계를 기입
- 2) 기부한 은행등란의 괄호에는 해당 은행등이 지원하지 않고 계열회사 또는 해당 은행등이 설립한 비영리법인등이 지원할 경우 해당 은행등과의 관계를 기입
- 3)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기부금등을 기재하되, 영업상 목적으로 비영리법인등에 제공한 기부금등은 제외한다.
- 4) 공시일 기준 과거 5년간 지원실적(제15조제6항에 따른 기부금등을 말하되, 영업상 목적으로 비영리법인등에 제공한 기부금등은 제외한다)

[별표 3] 사외이사의 보수(제20조 관련)

1. 종전 1년간 사외이사 지급보수

항 목	금 액	비 고
1. 사외이사 보수총액 및 내역		

가. 전체 사외이사 보수총액 / 사외이사 총원수	/ 명	
나. 보수내역		
1) 기본급		
2) 상여금		
3) 수당 가) 회의참가수당 나) 안전검토수당		
2. 위원회별 사외이사 보수총액		
가. (감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보수 총액 / 사외이사 총원수	/ 명	
나. (평가보상위원회) 소속 사외이 사 보수총액 / 사외이사 총원 수	/ 명	
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사외 이사 보수총액/ 사외이사 총원 수	/ 명	
3.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제공현황		
가. 업무활동비 지원		
나. 건강검진 지원		
다. 차량 제공		
라. 사무실 제공		
마. 기타 편익 제공		
4. 스톡옵션 부여 현황		
가. 부여대상자		
나. 부여주식수 1) 보통주 2) 우선주		
다. 행사기간		
라. 부여방법		
마. 부여결의 기관		
바 부여일자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37.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 용” 참조	

II. 향후 1년간의 사외이사 약정보수

항 목	금 액	비 고
1. 사외이사 보수총액 및 내역		
가. 전체 사외이사 보수총액 / 사외이사 총원수	/ 명	
나. 보수내역		
1) 기본급		
2) 상여금		
3) 수당		
가) 회의참가수당		
나) 안전검토수당		
2. 위원회별 사외이사 보수총액		
가. (감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보수총액 / 사외이사 총원수	/ 명	
나. (평가보상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보수총액 / 사외이사 총원수	/ 명	
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보수총액 / 사외이사 총원수	/ 명	

비고 :

1. 'I. 종전 1년간 사외이사 지급보수'는 해당 기간 중 사외이사 원수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연평균 원수로 기재.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외이사 수는 총원수에서 제외하고 비교란에 그 사실을 기재
2. 'I. 2'와 'II. 2'는 위원회별 사외이사 1인당 보수가 상이한 경우에만 기재하고, 비교란에 그 사유(예컨대 회의수당 상이, 회의횟수의 차이로 수당지급액 상이 등) 기재
3. 'I. 3. 마. 기타 편의 제공'은 가~라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편의제공 내역을 상세히 기재
4. 스톡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므로, 'I. 4. 스톡옵션 부여 현황', 'I.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이 기준 시행 전 부여사실이 있는 경우 기재

[별표 4] 이사회등 및 사외이사 운영 현황(제25조 관련)

1. 이사회등의 운영 현황

1. 이사회등의 개요 및 권한

2. 현 이사회 의 구성원

- 이사회 의장 : 000 (사외이사 여부)
- 선임사외이사(필요시) : 000

	상임 /사외	담당 업무	주요경력	최초 선임일 [계열회사포함]	임기 만료일	재임기간 [계열회 사 포함]	비고
000							*보유 주식수 *거 래 관 계 등 특이사항
000							
총 이사							명
사외이사							명
사외이사 비율							%

3. 종전 이사회 의 구성원 및 주요 활동내역

가. 종전 이사회 의 구성원

- 이사회 의장 : 000 (사외이사 여부)
- 선임사외이사(필요시) : 000

	상임 /사외	담당 업무	주요경력	최초 선임일 [계열회사포함]	임기 만료일	재임기간 [계열회사 포함]	비고
000							*보유주 식수 *거래관 계 등 특 이사항
000							
총 이사							명
사외이사							명
사외이사 비율							%

나. 종전 이사회 의 주요 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 고

4. 이사회내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

가. 감사위원회

1) 현 감사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	위원성명 (현 보직선임일/퇴임일)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 고
			*위원장 여부

2) 종전 감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

위원회명	위원성명 (현 보직선임일/퇴임일)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위원장 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동일)

II.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연도	사외이사 총수	신규 선임 이사 수	퇴임 사외이사 수	비고
	명	명 (000, 000)	명 (000, 000)	
			연평균 사외이사 수	
			최근 5년간 신규선임 사외이사 수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III.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및 계획

1. ()년도 활동내역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시간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목표	실적
000												

* 개최·참여란에는 횟수를 기재(해당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하고, 활동시간에는 간담회 실적 등을 포함하여 기재

2. ()년도 이사회가 정한 활동시간 의무

IV.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내역 및 계획

1. 이사회가 정한 사외이사 평가 방식 및 주기

2.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직전 연도 실시여부 및 금년도 실시계획

V. 사외이사의 교육·연수내역 및 계획

1. ()년도 사외이사별 교육·연수 이수 실적

사외이사 성명							
가. 교육·연수 실시 내역							
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나. 누적 교육 시간(총 00시간)							

2. ()년도 교육 계획 : 계획 교육프로그램 및 목표 교육시간

VI. ()년도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등에 기부금등 지원내역

사외이사명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기부한 은행등	지원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과거 1년간	과거 5년간
OOO		OOO ()	OOOO ()		
		OOO ()	OOOO ()		
OOO		OOO ()	OOOO ()		

VII. 사외이사 지원부서 현황 및 지원내역 등

비고 :

1. 'I. 1. 이사회 개요 및 권한'은 이사회 구성 소위원회 내역 등, 상법 제393조, 정관 등을 근거로 작성한 이사회운영내규 등에 따른 이사회 권한 등 전반적으로 약술
2. 'I. 2. 현 이사회 구성원' 및 'I. 3. 가. 종전 이사회 구성원' 중 주요경력은 학력 및 약력을 연도 순으로 기재하고, 비교란에는 해당 이사의 해당 은행등(계열회사 포함)과의 주요거래 관계, 보유주식 수 등 주요 사항을 적시
3. 'I. 3. 나. 종전 이사회 주요 활동내역' 및 'I. 4. 가. 2) 종전 감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은 종전 1년간을 대상으로 의안내용에는 의안제목 및 주요내용을 기재, 가결여부에는 의안별로 가결, 부결, 보류로 기재하고 비교란에는 부결, 보류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4. 'I. 4. 이사회내위원회 구성 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은 회사의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이사회내에 설치되었거나 되어있는 위원회를 기재하고 구성란에는 "사외이사 ○○○, 상근이사 ○○○"으로 기재, 비교란에는 변동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
5. 'II.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은 이 기준 시행 이후에 대해 최근 연도 순으로 작성하고, 비교란에는 해당연도의 대표이사, 은행장, 선임사외이사 등을 적시
6. 'III.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및 계획' 및 'V. 사외이사의 교육·연수내역 및 계획' 중 '1'의 경우 종전 1년간을 기준으로 '2'의 경우 향후 1년간을 기준으로 작성
7. 'VI. ()년도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등에 기부금등 지원 내역'의 작성요령은 '[별표 2] V.' 참조.
8. 각 항목 중 예외공시(제27조)를 통해 이 기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하거나 운영된 사항에 대해선 그 사실과 이유(제27조에 의해 공시한 내용)를 각 항목의 말미에 기재

상장협 실무전집 42

사외이사제도의 이해와 실무

2011년 11월 일 인쇄

2011년 11월 일 발행

발행인 박 승 복

발행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TEL. 2087-7000(대)

인쇄처 천일인쇄사

TEL. 2265-6666(대)

<비매품>

